

20世紀 韓國貿易史 (其二)

吳 相 洛

-<目 次>.....
- IV. 關稅制度
 - 1. 近代的 關稅制度의 成立過程
 - 2. 日帝下의 關稅制度
 - 3. 美軍政下의 關稅制度
 - 4. 大韓民國政府樹立의 關稅制度
 - V. 直接統制 및 奨勵政策
 - 1. 日帝下의 直接統制 및 奖勵政策
 - 2. 美軍政下의 直接統制政策
 - 3. 政府樹立의 直接統制 및 奖勵政策
 - VI. 外換管理制度
 - 1. 日帝下의 外換管理制度
 - 2. 解放後의 外換管理制度
 - VII. 國際收支
 - 1. 日帝下의 國際收支
 - 2. 解放後의 國際收支

IV. 關稅制度

1. 近代的 關稅制度의 成立過程

1) 開港과 近代的 關稅制度의 生成

우리나라에서 近代的 關稅制度를 謂할 수 있는 것은 1876年 日本과 江華島條約을 締結하여 通商이 開始된 때로 부터이다. 關稅는 通過稅를 비롯하여 輸出稅, 輸入稅 等을 總稱하는 것이나 그중에서 가장 重要한 意義를 가지는 것은 역시 輸入稅이다. 왜냐하면 輸入은 一國의 國民經濟에 가장 큰 影響을 미치기 때문이다. 輸入稅는 그 性格에 따라 自國產業의 保護를 為해 外國商品의 輸入을 抑制하는 保護關稅와 國家의 財政收入을 目的으로 賦課하는 財政關稅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正常的인 關稅의 機能이 이리 할 진대 歐美資本主義列強이 後進諸國에 그들의 商品을 輸出하는 데는 이와 相馳되는 것이어서 武

筆者：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附設 韓國經營研究所 研究員，서울大學校 經營大學院長，서울大學校 商科大學 教授

力으로 不平等, 低稅率의 通商條約을 强要하였던 것이다. 清國의 南京條約을 비롯하여 日本의 開港도 그려하였다.

不平等 通商條約의 不利性을 뒤늦게 깨닫게 된 日本은 江華島條約 以後 朝日貿易規則의 締結에 있어서 그들도 歐美列強의 手法을 踏襲하였을 뿐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서 朝鮮에 對해서는 無關稅를 强要하였던 것이다. 그들이 陸軍中將 黑田清隆로 하여금 軍艦六隻을 이끌고 江華島에 上陸시켜 大砲소리를 울려가며 條約을 成立시킨 것도, 1853年 美國의 페리(Perry)提督이 太平洋 艦隊를 이끌고 그들에게 하던 手法과 态似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歐美列強이 極東地域의 後進諸國에 對하여 비록 不平等의 低稅率의 關稅는 要求하였지만 一國의 關稅를 完全히 無關稅로 만들어 버린 예는 없었던 것인데, 江華島條約 6個月後에 調印된 朝日貿易規則과 「趙寅熙——宮本小一 議定書」는 阿片戰爭 以後의 清國을 비롯한 亞細亞의 後進諸國이 歐美列強으로 부터 받던 半殖民地의 低率의 關稅조차 받지 못하게 規定하여 버렸던 것이다. 關稅의 規定없는 通商條約을 締結하고 뒤늦게 그 不利性을 느끼게 된 朝鮮政府는 그 收拾策에 腐心한 結果, 日本人으로 부터는 徵稅가 不可能 하였으나 朝鮮人으로 부터나마 輸入稅를 徵收하기 為하여 清日通商條約의 例에 準하여 關稅規定과 稅率을 制定하였다. 그리하여 우선 釜山 豆毛鎮에 稅關을 設置하여 1878年 8月 10일부터 關稅를 徵收하기 始作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朝鮮의 近代的 關稅制度와 稅關設置의 始初이었다. 朝鮮政府의 この한 措置에 對하여 日本은 花房義質로 하여금 陸戰隊를 帶同시켜 豆毛鎮稅關을 示威行軍하는 한편 朝鮮政府에 壓力を 加하여 豆毛鎮稅關을 慶鎖케 하였다. 朝日貿易規則과 「趙寅熙——宮本小一 議定書」는 日本이 朝鮮을 侵奪하는데 있어서 그 始初부터 얼마나 狡猾하였던가를 말해 준다고 보겠다. 이에 의하여 1883年 朝日通商章程과 海關稅則이 制定될때 까지의 7年間 一切의 輸出入 貿易品의 通商이 無關稅로 實施되었던 것이다. 近代國家에 있어서 國內產業을 保護, 育成하는 데 뿐만 아니라, 國家의 重要한 財政收入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그 意義가 莫重하였던 關稅를 日帝는 始終一貫 武力의 強壓으로 朝鮮의 官民을 威脅하여 無關稅로 만들어 놓고 收奪을 态行하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1882年에 이르러서는 歐美列強의 競爭的인 進出로 因하여 朝美通商條約이 締結되어 朝鮮의 關稅自主權이 對外의으로 認定받게 되었고 英國과 獨逸도 同一한 關稅率로 朝鮮과 通商條約을 맺게 된 것이다. 이에 過去 7年間이나 無關稅로 一貫해왔던 日本은 당황하고 있던 次第에 國內에서는 壬午軍亂으로 排日感情이 激化되었다.

그리하여 困境에 處하게 된 日本은 當時 朝鮮政府의 外交 및 財政顧問으로 와있던 밀렌도르프와 野合하여 對朝鮮通商章程을 調印시키기에 이르렀다. 1883年 7月에 全文 42條로

된 朝日通商章程의 主要內容을 보면 첫째, 第36款에서 阿片의 輸入禁止를 規定한 것과 둘째, 第37款에서 朝鮮政府는 天災地變의 경우 日本領事에게 1個月前에 通告하고 防禦令을 宣布할 수 있다고 規定한 것, 그리고 셋째는 第40款에서 關稅 및 罰金은 朝鮮貨幣로 納付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日本貨幣로 納付하여도 無防하다고 規定한 것과 네째는, 日本商人에게 最惠國待遇를 賦與할 것 및 本通商章程의 有效期間을 5年으로 規定한 것 등이다. 그리고 關稅率을 規定한 海關稅則의 主要內容을 보면, 첫째, 日本人의 生活必需品(食糧, 日用雜貨, 家具等)에 對하여 輸入稅를 從價 5%로 하고, 둘째, 洋酒, 時計, 裝飾品, 寶石類의 輸入稅를 從價 25~30%로 하였으며 셋째, 一般商品에 對한 輸入稅를 從價 8~10%로 規定하였고, 그리고 네째, 輸出稅는 一般的으로 從價 5%로 規定하였으며 다섯째, 輸出品中에서 金·銀·地金·砂金에 對해서는 無關稅로 規定한 것 등이다. 이리하여 1876年부터 1883年 7月까지 7年餘에 걸쳐 施行되었던 無關稅時代가 終止符를 칙고 점차 近代的 關稅制度가 整備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日本의 狹猾性은 그치지 않아서 日本公使 竹添進一郎과 ベレン도르프(當時 朝鮮統理衛門協辦)가 野合하여 朝日通商章程과 海關稅則이 締結된지 不過 76일만인 同年 10月에 仁川·元山·釜山 3港의 海關稅徵收業務를 日本 第一銀行 釜山支店에 委託契約의 形式으로 넘겨 줌으로써 以後 6年間이나 日本人들이 關稅의 逋脫을 恣行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러한 베렌도르프의 背任으로 말미암아 日本人들은 關稅를 逋脫할 수 있는 갖은 手段을 다 썼으며 모처럼 制定된 朝日通商章程과 海關稅則은 實質적으로 無關稅期間과 別다른 差異를 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1889年 英國人 존슨이 仁川稅務司에 就任하여 稅關業務를 正常化함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關稅制度는 整備되기 始作하였다. 이리하여 關稅收入은 점차 朝鮮政府의 重要한 財政收入源이 되었으며 이를 擔保로 하여 清國·日本·獨逸·프랑스等 列強으로 부터 借款이 導入되었다.

2) 關稅收入과 財政

近代的 關稅制度의 生成과 함께 關稅收入의 推移를 考察해 보면 關稅制度의 成立過程이 더욱 明確히 檢討될 것이다. 1900年부터 1909年에 이르기까지 朝鮮의 貿易總額과 關稅收入의 推移를 보면 〈表 56〉과 같은데 1900年에 比하여 1909年은 貿易總額이 約 2.5倍增加하였는데 關稅收入은 約 2.8倍가 增加하였다. 그리고 貿易總額에 對한 關稅負擔率을 보면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로 5.4% 內外의 水準을 꾸준히 持續하고 있다. 이는 當時의 關稅率의 水準이 얼마나 低率이었던가를 말해 주고 있다. 貿易의 增加와 함께 關稅收入의 絶對額은 매년 增加되고 있는데, 關稅收入이 當時의 財政收入에 어느 程度의 比重을 차지하고 있었는가를 보면 〈表 57〉과 같다. 即 1905年에 財政收入에 차지하는 關稅收入의 比

〈表 56〉 貿易總額 및 關稅收入의 推移

單位 : 1,000圓

年 度 區 分	貿易總額(A)	關稅收入(B)	B/A(%)
1900	20,638	1,073	5.19
1901	23,320	1,299	5.57
1902	22,161	1,168	5.27
1903	28,080	1,432	5.19
1904	34,933	1,792	5.13
1905	40,888	2,230	5.45
1906	39,194	2,112	5.41
1907	58,361	3,050	5.22
1908	55,189	3,177	5.76
1909	52,898	2,994	5.69

資料：度支部，「韓國財政施設綱要」，1910.

〈表 57〉 財政에서 차지하는 關稅의 比重

(單位 : 1,000圓)

年 度 區 分	財政收入(A)	關稅收入(B)	B/A(%)
1905	7,480 (7,480)	2,230	29.8 (29.8)
1906	7,485 (7,485)	2,112	28.2 (28.2)
1907	16,459 (9,916)	3,050	18.0 (30.7)
1908	23,273 (13,410)	3,177	13.7 (23.7)
1909	29,228 (15,179)	2,995	10.3 (19.7)
1910	23,766 (14,787)	2,026	8.9 (13.9)

註：()안은 經常收入 및 經常收入에서 占하는 關稅의 比重임.

資料：度支部，「韓國財政施設綱要」，1910.

重은 29.8%에 達하여 約 3分의 1에 該當하고 있다. 이것이 1907年에는 10.3%로 크게 下落하였다. 한편 經常收入에서 차지하는 比重을 보면 1905年에 29.8%이던 것이 1907年에는 30.7%로 오히려 上昇하고 1910年에는 13.9%로 다시 下落하였음을 보여 준다. 이는 關稅收入의 增加率이 財政收入의 增加率을 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나 한편 經常收入에서의 比重과 현격히 差異를 내고 있음을 볼 때 이 財政收入이 國內財源의 擴充에 依해서가 아니라 主로 關稅收入을 擔保로 한 對日財政借款의 結果였다는 事實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當時의 財政收入에서 關稅收入이 어느 程度의 比重을 차지하고 있었는가를 좀더 具體的으로 보기 爲해서는 財政收入의 大宗을 이루는 租稅收入에서 關稅收入이 어느 程度의 比重을 占하고 있었는가를 보아야 할 것이다. 〈表 58〉에서 보는 바와같이 1906年에 關稅收入이 租稅收入總額에 차지하는 比重은 34.7%나 되었으며 1908年에는 30.0%，다시 1910年에는 22.3%라는 莫重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比率上 低下하는 影響이 있으나 絶對額은 上昇하고 있으며 5個年 平均으로 보아도

〈表 58〉 租稅總額에서 차지하는 關稅의 比重

(單位 : 1,000圓)

年 度	區 分	租 稅 收 入(A)	關 稅 收 入(B)	B/A(%)
1906		6,421	2,230	34.7
1907		8,960	2,112	23.5
1908		10,088	3,050	30.0
1909		10,947	3,177	29.0
1910		9,062	3,026	22.3

資料：度支部, 「韓國財政施設綱要」, 1910,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約 28%의 比重을 나타내고 있다. 이로써 當時의 關稅가 國家財政에 얼마나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었던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間接消費稅의 性格을 띠고 있는 關稅가 租稅收入의 約 3分의 1이라는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一般國民의 關稅負擔이 커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라 보겠다. 그리고 20世紀에 들어와서 朝鮮貿易의 大部分이 日本과의 關稅로 特定지위 지고 있음은 앞서 商品分析 및 市場分析에서 보아 온 바와 같

〈表 59〉 國 別 貿 易 船 入 港 牯 數(1900~1910·)

(單位 : 톤)

年別	國別	韓 國	日 本	清 國	其 他	合 計
1900		105,291	694,246	2,327	40,513	842,377
1901		122,228	807,190	3,330	52,561	985,309
1902		178,059	938,316	3,531	121,528	1,241,434
1903		160,894	1,365,701	10,616	208,794	1,746,005
1904		189,754	784,436	30,297	387,986	1,392,473
1905		198,712	1,369,322	28,409	404,181	2,000,624
1906		102,407	2,269,302	15,862	379,938	2,767,509
1907		74,788	2,669,003	14,149	330,731	3,088,671
1908		111,297	2,672,674	23,698	172,629	2,980,298
1909		118,486	2,808,518	22,333	84,711	3,034,048
1910		—	3,205,641	25,705	65,126	3,294,472

資料：朝鮮貿易協會編, 「韓國貿易史」, 1943

〈表 60〉 國 別 貿 易 船 出 港 牯 數

(單位 : 톤)

年別	國別	韓 國	日 本	清 國	其 他	合 計
1904		189,672	783,276	30,277	386,813	1,390,038
1905		198,040	1,368,586	28,464	402,174	1,997,264
1906		103,620	2,265,017	15,821	380,510	2,764,968
1907		74,032	2,674,033	14,109	334,869	3,097,043
1908		106,596	2,672,751	23,446	172,629	2,975,422
1909		114,867	2,807,389	22,307	84,011	3,028,574
1910		—	3,189,241	25,525	59,384	3,274,150

資料：朝鮮貿易協會編, 「韓國貿易史」, 1943

은데 이를 關稅와 關聯있는 貿易船 入港噸數 및 出港噸數에서 보아도 〈表 59〉 및 〈表 6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대로 나타난다. 20世紀에 들어서면서 부터 合併에 이르기까지 貿易船 入港噸數는 日本의 比重이 1900年에 全體의 約 82%, 1907年에는 約 86%, 다시 1910年에는 約 97%에 達하는 것이다. 그리고 貿易船 出港噸數를 보면 日本의 比重은 1905年에 約 68%, 1907年에는 約 86%, 다시 1910年에는 約 97%를 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日帝下의 關稅制度

1) 舊韓國 關稅制度의 据置宣言과 關稅制度의 整備

1910年 日帝는 朝鮮을 强占하여 完全한 植民地化가 이루어지자 從來 朝鮮과 通商條約을 맺고 있던 歐美列強에 對한 懷柔策으로 今後 10年間 朝鮮에 있어서의 外國貿易에 關하여 從前과 同一한 關稅制度를 維持하겠다고 宣言하였다. 強壓的인 手段으로 完全히 日本領域의一部가 되었음에도 不拘하고 日帝는 從來朝鮮과 通商條約을 맺고 最惠國待遇를 받고 있던 美國, 獨逸, 英國, 프랑스, 이태리, 清國等의 各國政府에 對하여 所謂 合併成立을 通告하는 한편 그들에 對한 暫定的인 懷柔策으로서 以後 10年間은 貿易에 支障이 없도록 舊關稅制度를 그대로 据置하겠다고 宣言한 것이다. 이리하여 1910年以後 10年間은 所謂 舊關稅據置期間으로서 從來의 舊韓國 關稅制度가 그대로 存續되 있는데, 即 所謂 韓日合併에 關한 宣言 第一項에서 “日本帝國政府는 從來의 條約에 關係없이 今後 10年間 韓國으로부터 外國에 輸出하거나 또는 外國으로부터 韓國에 輸入하는 貨物 및 韓國의 開港場에 들어오는 外國船舶에 對하여 現在와 同率의 輸出入稅를 賦課한다. 韓國으로부터 日本에 移出하거나 또는 日本으로부터 韓國에 移入하는 貨物 및 韓國 開港場에 들어오는 日本船舶도 亦是 今後 10年間 前項의 貨物 및 船舶에 對한 것과 同率의 課稅를 賦課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宣言하였으나 이는 歐美列強에 對한 하나의 形式的인 禮遇에 不過하였고 實質으로는 이로 因하여 日本은 何等의 支障도 없었던 것이며 또한 日帝當局의 財政收入上 一時必要한 措置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日帝는 從來의 舊韓國 關稅制度가 不文律의慣例에 따르던 경우가 많아 그 運用上 不便이 많았을 뿐아니라, 賦課의 公平을 期하기가 어렵다는 理由를 들어 當初의 据置宣言에 抵觸되지 않는 範圍內에서 諸般法規를 制定, 公布하였다. 即 1912年 3月에 朝鮮關稅令, 朝鮮關稅定率令, 朝鮮噸稅令 等을 制定・公布하였으며 1913年 3月에는 陸接國境地方에 있어서의 貨物 輸出入에 關하여 朝鮮陸接國境關稅令을 制定・公布하였던 것이다. 이들 諸法規는 대체로 日本의 關稅法規를 模倣하여 韓國의 特殊事情을 加味한 것으로서 從來의 舊關稅制度를 成文法的으로 再整理한 것이었다. 그後 약간의 修正이 加해지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1920年 8月 据置期間이 滿了될 때 까지

그대로 存續되었다. 朝鮮關稅定率令에 있어서는 從來로 부터 適用해 온 稅率을 基礎로 하여 그 分類 및 適用을 整理統一해서 關稅定率表를 作成하였다. 朝鮮關稅定率令 別表의 輸出入稅表를 重要品目別로 稅率에 따라 分類, 調整하여 作成해 보면 다음 〈表 61〉 및 〈表 62〉와 같다.

〈表 61-1〉 輸 入 稅 表

部 類	分類番號	品 名	稅 率 (從價 : %)
第 1 類	1~ 4	穀物・豆類・澱粉類・種子類.	5
	5~ 6	蔬菜・果實.	5~7.5
	7~14	茶・胡椒・香味料・各種砂糖・菓子類・麵類.	5~10
第 2 類	15~17	味噌・醬油・酢.	5
	18~24	肉類・魚介類・海產物・寒天・鹽・燕巢・豆腐.	5~ 8
	25~34	諸飲料・飲食物・酒精・酒類・各種煙草.	7.5~20

〈表 61-2〉 輸 入 稅 表

部 類	分類番號	品 名	稅 率 (從價 : %)
第 3 類	35~ 46	皮類・皮革製品・毛類・骨・角・牙.	5~ 8
	47~ 51	甲殼製品・珊瑚製品・真珠.	5~20
第 4 類	52~ 58	植物性油・礦物性油・油脂 및 蠕.	5~ 8
第 5 類	59~ 69	人蔘・藥材・各種製藥・化學藥.	5~10
第 6 類	70~ 77	染料・顏料 및 彩料・塗料.	5~ 8
東 7 類	78~ 86	植物纖維・繩・羊毛・各種織絲・生絲・綿.	5~ 8
第 8 類	87~103	綿製品・紗・絹製品・布帛製品.	7.5~ 8

〈表 61-3〉 輸 入 稅 表

部 類	分類番號	品 名	稅 率 (從價 : %)
第 9 類	104~107	衣類・帽子・靴・鉗.	5~ 8
	108~109	細貨類・真珠・金・銀 또는 貴石製의 것・髮飾具.	7.5~20
第10類	110~116	紙類・文具類.	5~10
第11類	117	石炭 및 코크스	5
	118~122	貴石類・세-도製品・도자이크製品.	7.5~20
	123~128	石類・各種시멘트・石灰.	5~7.5
第12類	129~135	瓦・土器・陶磁器・硝子製品.	5~7.5
第13類	136~144	鋼・ 닉켈・銅・各種金屬.	5~7.5
	145~151	金銀製品・鑄金屬製品・琺瑯・其他의 金屬製物品.	5~20

〈表 61-4〉 輸 入 稅 表

部類	分類番號	品名	稅率(從價: %)
第14類	152~161	時計・眼鏡・樂器・機械類・兵器.	7.5~10
第15類	162~169	木材.	7.5~10
	170~178	馬具・荷車・燈類・傘.	5~10
	179~185	漆器・家具・煙管.	7.5~20
	186~190	造花・美術品・遊戲用器具・玩具.	7.5~20
	191~199	薰香類・石鹼・성냥・油粕・肥料・護謨製品.	5~10
	200	船 舶	千屯當 0.25~0.50
	201~203	別號에 例擧치 않은半製品・別號에 例擧치 않은完製品	7.5~ 8

〈表 61-5〉 輸 入 稅 表

部類	分類番號	品名	稅率(從價: %)
第16類	204~216	諸學術器具・書籍・紙幣・銀行卷・有價證券・金・銀・地金・農具・蠶種	無 稅

資料：朝鮮貿易協會編，「朝鮮貿易史」，1943，pp. 155-164。

〈表 62〉 輸 出 稅 表

分類番號	品名	稅率(從價: %)
1~3	小麥・大豆・小豆.	5
4~6	荳胡麻子・生牛・牛皮.	5
7~8	石炭・鐵鑛	5
9	其 他	無 稅

資料：朝鮮貿易協會編，「朝鮮貿易史」，1943，pp. 155-164。

以上과 같은 朝鮮關稅定率令은 그後 數次에 걸쳐 改正되었다. 改正의 方向은 日帝의 植民地政策의 基本方向에 따라 그들의 商品市場化를 為하여 對日 輸入稅의 免稅範圍를 擴大하는 方向이었다. 그리하여 日帝는 合併後 10年間 舊關稅據置期間中에도 朝鮮에 있어서의 輸入稅 免稅範圍를 可及的 擴大하여 日本의 工業製品, 特히 消費財商品이 朝鮮에 있어서의 輸入總額의 90% 以上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政策은 國內에 있어서는 民族工業을 抹殺하는 施策으로 나타나게 되어 1910年 12月에는 所謂 朝鮮會社令의 宣布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 結果 舊關稅據置期間中에 國내에 建設된 近代工業은 農林水產物의 加工工業을 비롯하여 日本工業을 為한 原料工業 및 半製品加工, 또는 部分品工業 等이 大部分이었다. 其他 鑛物資源收奪을 為한 施設 및 日本工業과 非競爭的 部門의 工業이 약간 建設되었음에 不過하였으며 그것도 大部分이 日人資本에 依한 것이었다. 이와같은 植民地政策의 基本方向에 따라 朝鮮의 關稅制度도 改正되어 갔으며 朝鮮關稅定率令은 改正節次를 밝게 된다.

第1次 改正是 1913年 10月에 있었으며 그 내용은 輸出을 目的으로 하는 加工品, 修繕品 및 製造用品의 對日輸入稅를 免稅한 것이다. 이는 朝鮮의 工業을 日帝工業의 下請系列化시켜 日本產業과 貿易을 進興시키려는 目적이었다. 이러한 種類의 免稅品目은 그後 繼續 追加되었다.

第2次 改正是 1915年 11月을 期하여 實施되었는데 그 重要한 内容은 鎳物資源의 開發을 爲하여 鎳業用品의 輸入稅免稅範圍를 擴大시킨 것이다. 日帝는 合併 以前부터 이미 朝鮮의 金銀을 비롯하여 主要 鎳物資源을 掠奪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爲해 朝鮮關稅定率令에서도 金·銀等의 採掘에 必要한 器具, 機械, 爆發藥 및 化學藥品等의 輸入稅를 免稅하고 있었다. 合併後 日本은 그들의 重工業이 急速度로 進展함과 함께 低廉한 原料供給을 必要로 하였으므로 朝鮮에 原料加工業의 하나로 製鍊工業을 建設하기始作하였다. 그리하여 金·銀을 비롯하여 鐵·銅等의 製鍊部門에 있어서 鎔解劑로 必要한 鹽基性 鎳物을 免稅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朝鮮關稅定率令의 一部改正은 日帝 重工業의 低廉한 原料供給을 爲한 措置였다고 볼 수 있다.

第3次 改正是 1918年 3月에 製鐵·製鋼·設備用器材 및 石炭의 對日 輸入稅를 廢止한 改正이었다. 一次世界大戰中 日本資本主義는 急激하게 成長하였고 또 軍需工業이 勃興하여 製鐵 및 製鋼工業의 發達을 強力히 要求하였다. 이러한 狀況에서 日帝는 먼저 本國에서 製鐵業獎勵法을 公布하였으며 植民地 朝鮮의 關稅制度에도 그 要求를 貫徹시켰다. 即 年產 35萬屯 以上的 製鐵能力 또는 製鋼能力을 가지는 設備를 新設하거나 增設하는 경우, 그리고 그 副產物製造에 施設을 設立하는 경우에는 그에 必要한 器具, 機械, 材料 및 코크스配合劑, 溶解劑, 化學藥品, 古鐵 等의 輸入稅를 廢止하였다. 이러한 改正是 日本資本의 植民地 投資를 容易하게 하고 植民地에 있어서의 特別利潤을 保障하기 爲한 措置의 하나였다.

第4次 改正是 1919年 1月에 있었으며 그 主要內容은 輸出稅를 全廢하고 馬 및 緬羊에 對한 輸入稅를 免稅한 措置였다. 日帝는 合併과 함께 食糧 및 原料供給地로서의 利用度를 높이기 爲해 1912年 3月 朝鮮關稅定率令을 制定할當時에 이미 大部分의 輸出稅를 廢止하고 있었다. 다만 小麥, 大豆, 花胡, 麻子生牛, 牛皮, 石炭, 鐵鑛 等의 8個品目에 限하여 輸出稅를 存續하고 있었는데 植民地政策의 本格化와 함께 이것까지 全廢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緬羊의 輸入稅를 免稅한 것은 日帝의 羊毛自給政策에 따라 所謂, “南棉北羊”을 植民地朝鮮에 내걸고 그들의 原料供給地로서 모노칼츄어型 植民地化를 本格화한 것이었다.

馬의 輸入稅를 免稅한 것은 滿洲 및 鄂爾渾河產의 馬를 軍用으로 使用하기 爲하여 輸入을 奨勵하여 제주도를 中心으로 養育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第5次 改正是 1919年 9月에 食糧難打開를 爲한 措置였다. 明治維新以來 日本의 資本主義의 發展은 急激한 人口增加를 隨伴하였으나 日本의 農業生產은 如前히 半封建的 性格을 脫皮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심한 食糧難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 結果 1918年에는 日本各地에서 所謂 “쌀소동”이 発生하였다. 植民地 朝鮮이 食糧供給地로서의 役割을 다해 왔던 것이나 이 역시 封建的 小作形態를 持續시켜 收奪에만 急急하고 있었으므로 生產力이 發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1919年의 旱魃로 因한 兇作은 朝鮮植民地에 있어서까지도 심한 食糧難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朝鮮產 穀은 日本으로 가져가 그들의 食糧難을 解決하고 滿洲產 穀을 위시하여 高粱, 小麥, 小麥粉 米等의 輸入稅를 免稅함으로써 滿洲產 雜穀導入를 促進시켜 朝鮮의 食糧難을 解決하고자 한 措置였다. 이는 또한 輸入商品分析에서 穀의 輸入이 急速度로 增加한 現狀으로 나타났으며 市場analysis에서 滿洲의 位置가 두드러지게 顯著하게 된 事實과도 一致하는 内容이다.

2) 朝日 關稅制度의 統一과 關稅法, 關稅定率法 等의 施行

1920年 8月 舊關稅據置期間이 滿了되자 日帝는 그들의 關稅線을 朝鮮의 國境까지 延長시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同年 8月 29일부터 關稅法, 關稅定率法, 明治 33年法律 第 86號, 保稅倉庫法, 假置場法 等을 朝鮮에 施行하게 되어 關稅制度는 統一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1920年 8月 29일을 期하여 朝鮮은 名實共히 關稅障壁없는 日帝의 食糧 및 原料供給地가 되었으며 同時に 그들의 商品市場과 資本投下地로 開放된 것이다.

當時 日本의 關稅制度는 關稅法과 關稅定率法을 支柱로 하고 있었다. 關稅法은 1899年에 制定되어 1911年 2次世界大戰이 勃發하여 稅關이 事實上 閉鎖될때까지 4~5次에 걸쳐 改正되었는데 그 内容은 全文 108條로서 關稅의 賦課 및 徵收, 船舶, 貨物, 稅關官吏의 職權, 異議 및 訴願, 罰則, 犯則事件의 調査 및 處分等 主로 關稅行政一般에 關한 實體的 事項을 規定한 것이다. 關稅定率法은 1910年에 制定되어 2次世界大戰이 勃發할 때까지 20餘次에 걸쳐 改正되었는데 그 内容은 全文 11條 및 輸入稅 別表로서 構成되어 關稅率, 課稅標準, 減稅, 免稅等 主로 關稅額의 規定에 直接 關聯되는 實體的 事項을 規定하고 있다. 關稅定率法의 改正過程은 日本의 國內產業를 保護하기 爲하여 輸入關稅率을 점차 引上하는 方向으로 되어갔다. 即 一次世界大戰이 勃發하자 世界各國은 保護關稅政策을 强行하였으며 이에 따라 日本도 關稅障壁을 높여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1920年에는 1次

世界大戰中에 勃興한 新興產業을 保護할 目的으로 染料, 藥品, 機械類를 引上하였으며 연이어 1921年에는 鐵類, 化工品 等의 關稅率을 引上하였다. 다시 1924年에는 從價 10割의 奢侈品 關稅를 設定하고 1926年에는 輸入稅率의 大改正을 斷行하여 大戰中에 發生한 從價稅와 從量稅間의 不均衡을 是正하고 產業保護를 更우 強化하기 為하여 關稅障壁을 더 한층 높게 하였다. 1927年에는 砂糖 關稅를 引上하고 製鐵業獎勵法을 制定하였으며 1929年에는 本材 關稅를 引上시켰다. 그리고 1932年에는 主要國家의 金解禁措置와 世界大恐慌의 打擊으로 產業保護가 더욱 절실히 要求되어 銑鐵, 自動車部分品, 小麥, 木材等 29個 品目에 對한 關稅를 引上하였으며 其他 大部分의 從量稅를 一律의으로 3割 5分까지 引上하였다. 그 後의 全面的인 大改正은 1937年에 있었으며 그 內容은 石油 關稅의 引上, 自動車 및 內燃機關의 關稅를 引上하고, 砂糖, 編毛絲, 紙類 및 鎳物의 3割 5分附加稅를 撤廢하고 鐵의 輸入稅를 免稅한 것이다. 이는 當時의 戰爭準備에 따른 資材輸入 對策이었다고 보겠다

3) 對日輸入稅의 存置 및 撤廢

1920年 8月 29日 부터 朝日統一 關稅制度가 實施되자 日本側의 對朝鮮 輸出入稅는 全廢되었으나 朝鮮의 對日本 輸入稅만은 이를 當分間 存續시키기로 하였다. 當時 日帝의 植民地政策이 當面한 問題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1919年 三·一運動의 勃發로써 從來의 武力의 抑壓만으로는 植民地統治가 不可能하게 되었다는 點이다. 三·一運動을 製機로 하여 反日本民族抗爭이 점차 激化되기 始作하였으므로 日帝는 植民地人들의 自主精神을 마비시키지 않고는 植民地統治가 不可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所謂 文化政策이란 方式으로 植民地 統治方法을 变모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民族運動의 抹殺을 為한 諸般 施政方針을 隨行하기 為해서는 朝鮮總督府 財政上에 莫大한 經費를 必要로 하였다. 때문에 當時 朝鮮總督府 財政中에서 莫重한 比重을 占하고 있던 對日輸入稅를 當分間 存續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後述하는 바이지만 1920年의 朝鮮總督府 豫算에서 關稅收入이 租稅收入總額의 約 28%를 차지하고 있었음은 이러한 事情을 說明해주고 있다고 보겠다. 둘째로는 一次世界大戰以後 世界資本主義經濟의 大不況期를 맞아 日本도 對外貿易이 不振하여 戰時中에 過剩投資를 감행했던 工業生產이 점차 沈滯狀態에 突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日本 國內에서는 資本의 集中化가 強化되어 더 한층 價值法則이 貫徹되는 樣相을 나타내었고 對外的으로는 資本의 海外進出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日帝는 植民地朝鮮에 相對的 過剩資本을 輸出하여 特別利潤을 獲得함으로써 戰後의 不景氣를 打開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試圖는 當時 植民地朝鮮에서는 會社令의 撤廢라는 形態로 나타나게 되었다. 民族工業을 抹殺하고 그들의 商品市場化를 為하여 만들어 졌던 것인데 1920年 3月에 와서는 그러한 目的은 所期의 目的을 達成하였을 뿐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日本資本의 進出活躍에 支障이 되었으므로 存在價值가 없게 된 것이었다.

上述한 바와 같은 事情으로 因하여 對日 輸入關稅의 存置令은 1920年 8月 29日에 實施되어 이듬해 1921年 3月 31日로써 解除한다는 條件付로 施行되기에 이른 것인데 1921年에도 朝鮮總督府의 財政收入關係로 이의 撤廢가 不可能하게 되자 本令의 有效期間을 削除해 버리고 적당한 機會에 撤廢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 後 財政形便이 改善되어 감에 따라 점차 이를 撤廢하는 方向으로 改正을 거듭하여 1941年에 와서 비로서 完全한 撤廢를 보게 되었다.

同令의 主要內容을 引用해 보면 “(i) 日本, 臺灣, 檸太 等地에서 朝鮮에 들어오는 物品에는 從來의 朝鮮關稅定率令에 따라 移入稅(輸入稅)을 賦課한다. 但 그 稅額이 關稅定率法에 依한 輸入稅보다 높을 때에는 輸入稅額에相當하는 移入稅를 賦課한다. (ii) 移入稅의 免除에 對하여는 從來의 朝鮮關稅定率令의 例에 依한다. 其他 關稅定率法에 있어서 輸入稅를 免稅하는 것에 對하여는 勿論 移入稅도 免稅한다. (iii) 本令은 1921年 3月 31日로써 效力を 衰失한다.”

이제 그 間의 改正過程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第一次 改正——1923年頃에 이르러서는 朝鮮總督府의 諸般行政이 점차 整理되어 갔고, 또 그에 따라서相當한 財政收入源도 確保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從來의 對日輸入稅收入의 約半額만을 保留하고 酒精, 酒精含有料 및 織物 等의 3個品目 以外의 것은 全部 對日輸入稅를 撤廢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船舶 및 貨物의 取締制度를 緩和하여 朝鮮과 日本間을 運航하는 船舶 및 貨物에 對해서는 輸入稅, 消費稅 等의 課稅品目 以外의 것은 어느 港口를 막론하고 그 出入이 自由롭게 하였다.

② 第二次 改正——1927年에 日帝는 自國의 級紡織工業을 為하여 級織物 消費稅를 廢止함과 함께 朝鮮의 級織物 輸入稅도 從來의 從價 7分 5厘에서 從價 5分으로 3分의 1을 減稅하였다. 이를 全的으로 免稅할 意圖였으나 當時 對日輸入總額中 級織物輸入이 絶對的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總督府의 財政收入을 고려하여 減稅措置를 取한 것이다.

③ 第3次 改正——1937年에 이르러 日帝當局은 對日輸入稅의 全面的인 減稅措置를 斷行함과 同時に 1941年度 부터는 이를 全廢한다는 方針을 公布하였다. 그內容을 보면 1937

年 4月부터 1939年 3月까지 全般的으로 輸入稅率의 約 3分의 1을 점차로 減稅하고 1939年 4月부터 1941年 3月까지 나머지의 또 3분의 1을 점차 減稅하여 1941年 4月부터는 對日輸入稅를 全廢한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合併後 朝日間의 關稅障壁은 1941年 4月을 期하여 對日輸入稅가 撤廢됨으로써 全廢되게 되었다.

4) 免稅特例 및 國境關稅

日帝는 朝鮮이 그들의 植民地的 諸機能을 다하기 為하여 朝鮮에 그들의 關稅線을 延長하여 關稅法, 關稅定率法 等을 施行함에 있어서도 그것이 日本產業에 미치는 效果를 고려하여 몇가지 關稅特例를 設定하였다. 그 特例는 輸入稅 및 免稅에 關한 것과 鮮滿國境地帶에 있어서의 輸出入에 關한 것이었다. 이 역시 1920年 8月에 「關稅法, 關稅定率法, 保稅倉庫法, 假置場法 等의 朝鮮에 있어서의 特例에 關한 件」이라 하여 法律로서 公布施行하였으며 그 内容은 日本外 地域으로 부터 輸入品에 對한 輸入稅, 免稅, 鮮滿國境地帶에 있어서의 貨物輸出入地點 및 輸入稅率, 免稅, 假置場 等을 規定하고 있다. 이러한 特例의 規定은 朝鮮으로 하여금 더욱 徹底히 日帝에 봉사하게 만드는 手段의 하나였으며 그 改正의 過程도 이러한 基本法則을 따르고 있다. 即 1937年 日帝가 滿洲를 植民地化하게 되자 그 特例를 대폭 強化하여 關稅制度上 類例없는 特例를 設定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滿洲를 最大限으로 植民地로써 利用하고 大陸侵略을 為한 基礎作業을 完遂하기 為한 것이었으며, 나아가서 商品 및 市場分析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世界情勢의 變化로서 日帝가 朝鮮과 滿洲의 經濟構造를 日本帝國主義經濟를 為한 分業構造化하기 위한 措置의 一環이었던 것이다.

5) 出港稅

合併以來 朝鮮과 日本은 서로 消費稅構造를 달리하고 있었다. 1920年 朝日間에 關稅制度가 統一되게 되자 朝鮮의 對日輸出稅가 撤廢되었으므로 消費稅 負擔의 均衡을 維持하기 為해서는 兩國間의 貨物移動에 對해서 적절한 措置를 강구할 必要가 있었다. 그리고 朝鮮에 있어서 關稅特例로 말미암아 日本과 相異한 稅率을 適用한 輸入貨物이 日本에 再輸出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兩國間에 貨物移動에 關하여 적당한 課稅로서 消費稅 負擔을 調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 역시 1920年 8月 「朝鮮出港稅令」으로 公布 施行되었다.

그 主要內容을 보면 (i) 朝鮮으로 부터 日本, 臺灣, 檍太로 物品을 輸出하는 경우, 日本國內에서 內國稅를 賦課하는 物品에 대하여는 그 內國稅率과 同一한 税率의 出港稅를 賦課한다. (ii) 朝鮮에서 無關稅로 輸入한 物品을 日本에 輸出할 경우에는 日本의 關稅定率法에 依한 輸入稅率과 同一한 税率의 出港稅를 賦課한다. 또한 朝鮮에서 關稅定率法의 稅率

보다 낮은 稅率로 輸入한 外國物品을 日本에 輸出할 때에는 그 差에相當하는 稅率의 出港稅를 賦課한다. (iii) 朝鮮內에서 製造한 織物製品을 日本에 輸出하는 경우에는 그 原料로서 使用한 織物價格의 1割, 그리고 菓子 및 糖果 等에 對하여는 그 含有甘蔗糖 100斤當 5圓의 出港稅를 賦課한다는 等이다. 이러한 出港稅는 以後 10 餘次에 걸쳐 改正되었는데 그 過程은 日本內의 消費稅를 비롯한 各種 稅法改正과 直結되었다.

6) 關稅收入 및 關稅負擔率의 推移

日帝下의 우리나라 關稅收入과 輸出入貿易額의 一般的 推移를 보면 〈表 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年度에 따라 다소 起伏은 있으나 구준한 增加趨勢를 보이고 있다.

〈表 63〉 輸出入 貿易額과 關稅收入의 推移 (單位 : 1,000圓)

區分 年度	輸出額(A)	輸入額(B)	關稅(C)	C/B(%)	備	考
1911	18,854 (13,340)	54,087 (34,058)	4,062	7.5		
1912	20,985 (15,368)	67,115 (40,756)	4,712	7.0		
1913	30,878 (25,313)	41,580 (40,429)	4,807	6.7	1913年 10月 15日부터 加工, 修繕 製造用 物品의 輸入稅免除.	
1914	34,388 (28,587)	63,231 (39,046)	3,893	6.1		
1915	49,492 (40,900)	59,199 (41,535)	4,416	7.4	1915年 11月 5日부터 鑛業用品의 輸入稅免除範圍를 廣大	
1916	56,801 (42,964)	74,456 (52,459)	5,032	6.7		
1917	83,775 (64,725)	102,886 (72,696)	7,295	7.1		
1918	154,189 (137,204)	158,309 (117,273)	—	—	1918年 3月 7일부터 製銑·製鋼· 設備用器材 및 石炭輸入稅廢止.	
1919	219,665 (199,848)	280,786 (184,917)	15,546	5.6	1919年 1月 16일부터 輸出稅를 全部 廢止하고 馬纏羊輸入稅를 免除	
1920	191,958 (169,380)	238,956 (143,111)	9,798	4.0		
1921	218,277 (197,392)	232,381 (156,482)	—	—		
1922	215,404 (197,914)	256,044 (160,247)	13,825	5.4		
1923	261,665 (241,262)	265,790 (167,452)	7,145	2.6	1923年부터 輸入稅中約半을 保畜 하고 나머지는 撤廢(織物·酒精· 酒料含有飲料品의 移入稅만 保畜)	
1924	329,039 (306,660)	309,593 (211,817)	8,230	2.6		
1925	341,630 (317,288)	340,011 (234,623)	—	—		
1926	362,954 (338,175)	372,169 (248,235)	12,203	3.2		
1927	358,924 (330,791)	383,417 (269,473)	9,949	2.6	1927年 부터는 輸入稅中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는 紡織物輸入稅를 輕減.	
1928	365,978 (333,829)	413,990 (295,839)	10,420	2.5		

1929	345,664 (309,891)	423,093 (315,325)	10,717	2.5	
1930	266,547 (240,694)	367,048 (278,194)	8,466	2.3	
1931	261,798 (249,026)	270,466 (217,770)	7,402	2.7	
1932	311,394 (282,144)	320,356 (258,670)	7,966	2.5	
1933	368,627 (315,854)	404,185 (339,817)	11,158	2.7	
1934	465,367 (407,693)	519,149 (439,622)	12,728	2.4	
1935	550,797 (485,893)	659,403 (558,813)	13,266	2.0	
1936	593,313 (518,047)	762,417 (647,918)	16,814	2.2	
1937	685,542 (572,445)	863,552 (753,413)	12,801	1.4	1937年부터 移入稅를 全面輕減.
1938	389,606 (710,539)	1,055,928 (921,245)	16,761	1.6	
1939	1,006,793 (736,882)	1,388,448 (1,229,417)	17,231	1.2	
1940	947,809 (—)	1,536,367 (—)	14,903	1.0	
1941	937,297 (—)	1,519,338 (—)	7,765	0.5	1941年에는 移入稅를 全面 廢止.
1942	944,722 (—)	1,491,154 (—)	2,436	0.1	

資料：朝鮮總督府，「朝鮮總督府統計年報」，空欄은 「統計年報」缺本으로 調査되지 못한 것임。

註：()안은 對日輸出入額。

1911 年에 4,062 千圓이던 것이 1920 年에는 9,748 千圓으로 그리고 1929 年에는 10,717 千圓, 1937 年에는 12,801 千圓, 다시 1940 年에는 14,903 千圓으로 中間에 起伏은 있으나 增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輸出入貿易額의 增加趨勢에 比하면 關稅收入이 越等히 그 增加率이 낮은 것은 朝鮮의 關稅政策이 朝鮮經濟의 自主的發展과 그에 따른 內的 requirement에 依한 것이 되지 못하고 日本帝國主義經濟의 要求에 따라 隨行되었기 때문이었음은 자명한事實이다. 即 1911 年에 輸出 18,854 千圓, 輸入 54,087 千圓, 關稅收入 4,062 千圓이던 것이 1924 年에 와서는 輸出 329,039 千圓, 輸入 309,593 千圓, 關稅收入 8,230 千圓으로 各各 增加하였고 1939 年에는 輸出 1,006,793 千圓, 輸入 1,388,448 千圓, 關稅收入 17,231 千圓으로 各各 增加하였다, 따라서 1911 年부터 1939 年에 까지 輸出額은 約 53 倍 增加하고 輸入額은 約 25 倍 增加하였는데 比하여 關稅收入은 不過 4倍의 增加를 示顯하고 있는데 지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年度別 負擔率로써 比較해 보면 더욱 明確히 나타난다. 前記의 〈表63〉에서 輸入總額에 대한 關稅負擔率을 比較해 보면 1911 年부터 1917 年 까지는 輸入總額에 對한 關稅負擔率이 7% 內外였으나 1918 年부터 1922 年 까지에는 5% 內外로 低

下하였고 또 1923 年 부터 1936 年 사이에는 다시 2.5% 内外 低下하였으며 1937 年 부터 1940 年 사이에는 1.5% 内外, 1941 年 以後에는 0.5% 以内로 低下하였다.

이와 같이 輸入總額에 對한 關稅負擔率이 점차 低下하고 있는데 그 理由는 지금까지의 關稅制度의 變遷過程에서 論述해 온 바이지만 <表63>에 依據하여 좀더 부연해 보자. 1911 年 부터 1917 年 사이에 있어서 輸入總額에 對한 關稅負擔率이 대체로 7% 内外를 維持하고 있으나 1913年度와 1914 年度에 있어서는 각각 6.7% 와 6.1% 로 低下하고 있는데 그 主된 原因은 表의 備考欄에 說明되고 있는 바와 같이 1913 年 10 月 15 日을 期하여 日帝當局이 加工, 修繕 및 製造用物品의 輸入稅를 免稅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1915 年에 이르러 關稅負擔率은 일단 7.4% 로 上昇했으나 1916 年에 와서 다시 6.7% 로 低下되고 있는데 이것은 1915 年 11 月 5 日을 期하여 鐵業用品의 輸入稅 免稅範圍를 擴大한데 基因한 結果이었다. 다시 1918 年 부터 1922 年에 이르는 期間 동안에 輸入總額에 對한 關稅負擔率이 5% 内外로 低下된 것은 1918 年 3 月 7 日을 期하여 製銑製鋼設備用 器資材 및 石炭의 輸入稅廢止와 1919 年 1 月 16 日에 輸出稅를 全面的으로 廢止함과 함께 馬 및 緬羊의 輸入稅를 免稅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1923 年 부터 1936 年에 이르는 期間에 있어서 關稅負擔率이 대폭 下落한 것은 1923 年에 對日 輸入稅中 約 半을 保留하고 나머지는 撤廢하였고, 또 1927 年에는 對日 輸入稅中 가장 큰 比重을 占하고 있던 編織物輸入稅를 3 分의 1로 減稅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1937 年에 와서는 輸入總額에 對한 關稅負擔率이 다시 1.5% 内外로 急激히 下落한 것은 同年度 부터 日帝當局이 對日 輸入稅를 全面的으로 輕減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1941 年 부터는 關稅負擔率이 0.5% 以下의 水準으로 下落하여 1942 年에는 0.1% 로써 거의 零으로 떨어지는데 이것은 1941 年 3 月 31 日을 期하여 合併當初 부터 日帝가 企圖했던 對日 輸入稅를 全廢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輸入總額에 對한 關稅負擔率이 日帝가 實施한 關稅政策에 따라 점차 低下되어 갔는데 여기에서 단 한가지 看過해서는 안되는 點은 對日 貿易에 全的으로 依存되어 있었기 때문에 關稅負擔率이 低下하였으나 日本을 除外한 其他 地域에 對해서는 日帝의 保護關稅政策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關稅率水準도 아주 높았다는 點이다.

끝으로 朝鮮總督府 財政收入에 차지하는 關稅의 比重을 보면 <表64>와 같은데 關稅收入은 財政收入의 增加率에 比하여 매우 緩慢한 增加率을 보이고 있으나 그 絶對額은 대체로 每年 增加趨勢를 보여 1911 年에 4,062 千圓이던 것이 1940 年에는 14,903 千圓으로 約 3.6 倍 增加하였다. 그러나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日帝의 後半期에 접어 들면서 부터 朝鮮總

〈表 64〉 朝鮮總督府財政收入 및 租稅收入에서 차지하는 關稅의 比重 (單位 : 1,000圓)

區分 年度	財政收入(A)	租稅收入(B)	關稅收入(C)	C/A(%)	C/B(%)
1911	52,284	12,438	4,062	7.7	32.6
1912	62,127	13,362	4,712	7.5	35.2
1913	63,093	13,904	4,807	7.6	34.6
1914	62,048	16,685	3,893	6.2	23.3
1915	62,722	17,494	4,416	7.0	25.2
1916	68,202	18,876	5,032	7.3	26.6
1917	74,903	22,679	7,295	9.7	32.1
1918	100,112	29,185	—	—	—
1919	125,804	38,519	15,546	12.3	40.3
1920	146,344	34,901	9,748	6.6	27.9
1921	175,135	36,903	—	—	—
1922	169,361	42,525	13,825	8.1	32.5
1923	152,713	33,974	7,145	4.6	21.0
1924	143,006	37,401	8,230	5.6	22.0
1925	184,901	38,629	—	—	—
1926	211,709	41,947	12,203	5.7	29.0
1927	234,243	43,363	9,949	4.2	22.9
1928	238,152	44,633	10,420	4.4	23.3
1929	240,579	45,988	10,717	4.4	23.3
1930	218,210	43,479	8,466	3.9	19.4
1931	214,954	40,392	7,402	3.4	18.3
1932	220,301	41,166	7,966	3.6	19.3
1933	252,073	47,625	11,158	4.4	23.4
1934	300,942	56,129	12,728	4.2	22.6
1935	330,219	64,802	13,266	4.0	20.4
1936	384,493	75,392	16,814	4.3	22.3
1937	470,709	86,413	12,801	2.7	14.8
1938	590,276	114,491	16,761	2.8	14.6
1939	800,696	150,230	17,231	2.1	11.4
1940	995,264	205,005	14,903	1.4	7.2
1941	1,085,391	242,386	7,765	0.7	3.2
1942	—	338,331	2,436	—	0.7

資料：朝鮮 總督府，「朝鮮總督府 統計年報」

註：空欄은 資料未備。

督府의 財政收入 및 租稅收入總額에 차지하는 關稅輸入의 比重은 점차 低下되어 가고 있다.

特히 1937年부터 1940年 사이에는 租稅收入總額中에 關稅收入이 차지하는 比率이 10% 内外로 急激히 低下하고 드디어 1942年 以後에는 1% 以下로 低下하고 있는데 이는 日帝當

局이 그들 本國의 經濟事情에 따라 對日輸入稅를 全面的으로 輕減하여 가면서 드디어는 全

廢하게 된 結果로 關稅輸入의 增加率이 相對的으로나 絶對的으로나 다 低下하였기 때문이

었다. 이와 같은事實은 朝鮮의 關稅政策을 全般的으로 左右해온 基本法則이 日本帝國主義經濟의 内的 要求에 依해 그 植民地的 役割을 다 하는데 있었으며 朝鮮經濟의 内的 要求를 反映하지 못하였음을 勿論이려니와 朝鮮總督府의 獨立採算制의 内的 要求도 關稅政策을 左右하는 第1義的 條件이 되지 못하였음을 證明해 준다고 보겠다.

3. 美軍政下의 關稅制度

1) 日本帝國主義關稅制度의 存續

1945年 8月 15日 日帝의 敗亡과 함께 當時의 美陸軍太平洋地區最高司令官 맥아드將軍은 戰後의 社會的 混亂과 行政的 空白狀態에 대처하기 為하여 “別途의 指示가 있을 때 까지 現狀을 維持하라”는 布告 第二號를 發表하였다.

이에 따라 朝鮮總督府管下의 諸般事務는 敗戰後에도 當分間 그대로 維持되게 되었는데 實質的으로는 空白期間이 된 것이다. 同年 9月 8日 美軍政이 實施되자 美軍政當局은 韓國經濟의 再編成과 外國貿易의 正常化를 為해 貿易秩序를 整備한 稅關의 再開를 必要로 하였는데 當時의 狀況은 日帝末期의 遺產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 即 日帝末期 二次世界大戰이 決定的으로 日本에 不利한 方向으로 기울어지기 始作하자 日本軍部는 戰局의 挽回에 急急한 나머지 戰時에는 稅關行政보다 交通行政이 重要하다는 理由로 從前의 朝鮮總督財務局의 所管이었던 關稅係를 廢止하고 同府 交通局의 埠頭係로 事務를 移管함과 同時に 各地方의 稅關은 埠頭局이란 名稱으로 바꾸고 軍部가 이를 直接支配하였다.

그리나 關稅法規는 그대로 存續하고 있었으며 稅關行政의 中央機構도 交通局埠頭係가 그 命脈을 維持하고 있었으므로 이것이 美軍政期에 있어서 稅關再開의 母體가 된 것이다. 解放直後 混亂期의 美軍政이 當面한 關稅行政은 優先 當時 성행하였던 密貿易의 取締로부터 開始되었다. 當時의 密貿易은 解放後 심한 物資不足에 處해 있던 韓國經濟에 重大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特히 國內의 物價秩序를 破壞하는 主된 要因이 되고 있었으므로 美軍政當局은 1946年 1月 美軍政法令 第39號로써 對外貿易規則을 公布함과 同時に 密貿易取締를 始作하여 同年 10月에는 軍政法令 第116號를 公布, 密貿易取締를 關稅行政의 主된 業務로 삼았다. 이와 같은 關稅事務의 再開가 要求되었을 때 美軍政은 關稅政策의 基調를 優先 “明白히 廢止될 때 까지 從來대로 日本法을 存續시킨다”라고 美軍政法令 第21號로써 公布하였다.

그리하여 解放直後로 부터 1948年 8月 大韓民國政府樹立後 새로운 關稅法이 公布될 때 까지 約 3年間 數次에 걸쳐 部分的인 改正은 있었지만 日帝의 舊 關稅法, 關稅定率法, 保稅倉庫法, 保稅工場法, 關稅貨物取扱人法, 關稅特例法, 等이 그대로 實施되기에 이르렀.

다. 日帝의 舊關稅制度를 그대로 存續시킨 美軍政法 第21號 (1945年 11月 2日)의 내용을 보면 同法令 第1條는 “法律의 存續; 朝鮮總督府가 發布하고 法律의 効力を 가진 모든 法律, 規則, 命令, 告示, 其他文書로써 1945年 8月 9日 現在 實施中인 것은 그간 廢止된 것을 除外하고는 美軍政의 特殊命令으로 廢止할 때 까지 全的으로 그 効력이 存續함, 地方의 諸般法規와 慣例는 當該官廳에서 廢止할 때 까지 그 効력이 存續함, 法律의 規定으로서 朝鮮總督府, 道廳, 府, 面村의 組織과 局長, 課長, 府尹, 郡守, 警察署長, 稅務署長, 面長, 村長, 其他下級職員에 關한 것은 美軍政長官의 命令으로 改正 또는 廢止된 것을 除外하고는 當該官廳에서 廢止할 때 까지 이를 存續함, 從來의 朝鮮總督이 行使하는 諸般職權은 美軍政長官이 이를 行使함.” 라고 規定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美軍政期에 實施된 關稅制度는 美軍政令 第21號에 依하여 日帝 植民地時代의 舊關稅制度를 그대로 踏襲하였던 것인데, 當時의 舊關稅法規는 1926年 日帝當局에 依하여 全面的인 輸入稅率이 大改正이 있은 以來, 數次 部分的改正은 있었으나 對外貿易이 急激히 縮少된 2次大戰末期 부터 解放直後에 이르는 數年間에 있어서는 거의 部分的인 改正도 없었던 것이었다. 解放과 더불어 激變한 國內의 社會的, 經濟的, 諸事情, 特히 극심한 인프레는 終來의 從量稅를 전혀 無意味하게 하였으며 密貿易의 성행은 舊關稅法規의 改正乃至 補充을 不可避하게 하였다.

2) 關稅法規의 改正過程.

前述한 바의 事情으로 因하여 美軍政期 3年 間을 通하여 關稅法規는 數次의 改正이 있었는데 이를 大別해 보면, 第1次 改正是 1946年 10月 法令 第116號에 依한 것으로서 關稅定率法中 輸入關稅率의 全面的引下와 密貿易 단속을 内容으로 한 것이었다.

이 改正是 當時に 輸入關稅率을 如何한 경우를 莫論하고 1割을 超過하지 못하도록 規定하였는데 이는 日帝統治時에 輸入關稅率이었던 5分~10割에 比하면 全般的으로 볼 때 極히 낮은 關稅率이었을 뿐아니라 當時に 累增되고 있던 인프레를勘案한다면 事實上 無關稅狀態와 다름이 없었다. 解放直後 부터 急激하게 累增되어간 인프레에도 不拘하고 日帝時의 從量稅率을 그대로 踏襲한 것이기 때문에 1946年的 不均關稅負擔率은 事實上 8厘3毛에 不過한 것이어서 無關稅와 다름없는 前無後無한 低率의 關稅였던 것이다. 따라서 美軍政當局의 改正法令은 物資缺乏을 緩和한다는 理由는 되겠지만 韓國의 產業保護와 自主的經濟再編成에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第2次 改正是 1948年 4月 法令 第177號 및 第184號에 依한 것으로서 그 主된 内容은 從來의 從量稅를 撤廢하고 1割均一의 從價稅를 設定한 것과 稅關關係手數料 및 增稅를 從

前의 50倍로 引上한 것이었다. 이는 解放과 더불어 累增되어 온 인프레로 因하여 從量稅를 從價稅로 改正한 前進的 改正이었으나 輸入稅를 國內產業保護 및 經濟建設과 相關없이一律的으로 1割로 規定한 것은 世界關稅史上 類例없는 不合理性을 內包하고 있었다고 보겠으며 當時 日本의 關稅率이 平均 2割以上이었음을 比較해 볼 때 이 역시 低率의 關稅率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稅關關稅手數料와 噴數의 50倍 引上은 當然한 措置였으나 이 역시 當時 1944年으로 부터 1946年까지 物價上昇率이 96倍이었음을勘案해 보면 引上率이 너무 낮았다는 것도 지적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第3次 改正是 1948年 7月 法令 第211號에 依한 것으로서, 그 主된 内容은 當時 中國人이 經營하고 있던 仁川稅關保稅倉庫에 輸入貨物이 長期間 藏置됨으로서 拔荷 또는 其他方法으로 密輸가 盛行되었으므로 이를 制裁하기 為하여 取해진 措置였다.

이와 같이 美軍政期間을 通하여 3次에 걸쳐 改正過程을 겪었으나 그 改正 内容은 輸入 關稅率의 一律的인 引下로 特定지위에 國內產業의 保護育成이란 面에서나, 財政收入의 面, 어느 面으로 보아도 韓國經濟의 自主的인 再建方向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3) 關稅收入의 推移.

美軍政期의 우리나라 關稅收入의 推移를 보면 〈表 65〉와 같은데 美軍政 3年間을 通하여

〈表 65〉 貿易額 및 關稅收入推移 (單位: 1,000圓)

年 度	關 稅 收 入	輸 出 額	輸 入 額
1946	14,000	47,099	168,406
1947	279,000	1,111,133	2,088,125
1948	1,588,473	7,195,746	8,857,457

資料 : 嚴承煥, 「關稅法解義」.

關稅收入은 輸入額과 比例하여 急增하고 있다. 特히 1948年度의 關稅收入 및 輸出入額의 急增은 同年度부터 從量稅를 廢止하고 一割 均一의 從價稅를 實施하고 輸入稅를 實質으로 無關稅狀態에 두게 됨으로써 輸入이 激增한 結果이다. 그러면 當時 激甚했던 인프레를勘案하면서 이 關稅收入이 國家財政收入 및 租稅收入에 차지하는 比重을 考察해 보면 〈表 66〉과 같다. 即 1946年에는 關稅收入이 財政收入에 차지하는 比重은 0.2%, 1947年에는

〈表 66〉 美軍政期 財政收入 및 關稅收入에서 關稅收入이 차지하는 比重 單位: 百萬圓

年 度	財政收入(A)	租稅收入(B)	關稅收入(C)	C/A	C/B(%)	B/A(%)
1946	8,013	722	14	0.2	1.9	9.0
1947	15,453	3,600	279	1.8	7.7	23.3
1948	25,558	5,058	1,558	6.1	30.8	20.0

資料 : 韓國產業銀行調查部, 「韓國產業經濟十年史」, 1955. 8.

1.8%에 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48年度에는 急增現象을 나타내어 6.1%에 达하고 있는데 이는前述한 바의 一割均一 從價稅制의 採擇에 基因하고 있다. 그러면 나아가서 租稅收入中에서 關稅收入이 차지하고 있는 比重을 보면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6年에는 租稅收入中에서 關稅收入이 차지하는 比重은 1.9%였는데 1947年에는 7.7%로 增加하고 다시 1948年에는 一躍 30.8%로 急增하였다. 이와 같이 美軍政 3年間에 있어서도 비록 그 占하는 比重은 낮지만 關稅收入의 財政收入 및 租稅收入에 占하는 比重이漸增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大韓民國 政府樹立과 關稅制度

1) 新關稅法의 制定

大韓民國政府가 樹立된 後 이듬해인 1949年 11月에 全文 253個條의 新關稅法과 756種目的 稅番 및 1,706個의 稅率數에 達하는 附屬稅率表가 制定되었다. 新關稅法의 制定要綱을 보면 優先 形式的으로 舊法令을 統合, 整備하고 西歐의 諸關稅制度를 綜合하기로 하였으며 稅率은 激甚한 인프레를勘案하여 一律的으로 從價稅制를 採擇하기로 하였다.

稅率의 策定은 첫째, 國民의 生活必需品으로서 國內에서 生產할 수 있는 完製品을 基準으로 한 基本稅率을 3割로 하였고, 둘째, 國內에서 전히 生產되지 않는 緊急必需品과 國內에서 生產할 수 있는 生活必需品의 原資材를 基準으로 한 最下稅率을 1割로 하였다. 그리고 物品의 必需程度, 國內生產의 有無, 用途 等에 따라서 最下 1割로 부터 最高 8割 以內에서 稅率을 策定하여 煙草, 酒類等 特殊嗜好品에 對하여서는 最高 10割로 策定하기로 하

<表 67> 輸入稅率의 基準表

(單位 : %)

區 分	主要品目	輸入稅率의 基準			
		原資材	半製品	完製品	工業資材 인完製品
緊必 量인 것	國內生產이 없거나 或은 極少 國內에서 一部 生產되거나 或 은 生產할 수 없는 것	無 稅	10	15	10
急物 및 品	國內에서 需要量全部가 生產되 거나 或은 生產할 수 있는 것	10	15	25	15
緊 急 物 不 品	國內에서 生產되지 않는 것	15	25	35	20
不 品	國內에서 生產되는 것	20	30	40	30
奢 侈 品	國內에서 生產되지 않는 것 或 은 生產되는 것으로 右記 物品	30	40	50	40
	菓子·化粧品·毛皮羽· 毛·製品其他下記以外의 奢侈品	40	50	60	—
	貴金屬·寶石·真珠·象牙 등등 使用하거나 或은 장식 한製品·身邊裝飾用細貨類 酒類·煙草·化粧品等	60	80	100	—

였으며, 國內에서 전혀 生產되지 않거나 그 生產量이 需要量에 比하여 極少量인 特殊한 것을 無稅品의 基準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와 通商關係를 갖게 될 美國, 英國, 中國, 日本 等의 輸入稅率을 고려하여 위의 〈表 67〉과 같은 基準表를 作成하였다.

以上과 같은 要綱에 依하여 新關稅法은 制定되었으며 그 構成은 第 1 章, 總則, 第 2 章 物品, 第 3 章 運送機關, 第 4 章 稅關貨物取扱人, 第 5 章 稅關官吏의 職權, 第 6 章 罰則, 第 7 章 調査와 處分, 第 8 章 雜則의 順序로 構成되었다. 이터한 新關稅法의 附屬輸入稅率表에서 各類別 分類內容과 平均稅率을 보면 〈表 68〉과 같다. 第 1 類는 大部分이 工業 및 保健衛生에 必要한 것으로서 平均稅率이 가장 낮은 15.2%이며, 第 2 類는 國內生產이 全無하거나 또는 工業原料 및 建設資材로 所要되는 것으로서 稅率은 比較的 낮게 策定되어 平均稅率은 두번째로 낮은 19.6%이었다. 第 3 類는 大部分이 工業原料로서 平均稅率은 比

〈表 68〉 輸入稅率 및 分類細目表

分類番號	分類品目	稅番數	稅率數	平均稅率 (%)
第 1 類	革品類·化粧品·爆發物	129	176	15.2
第 2 類	色素 및 塗料	41	61	19.6
第 3 類	油脂蠟 및 同製品	31	53	20.6
第 4 類	食料品·飲料 및 煙草	56	126	44.4
第 5 類	衣類 및 裝身用品	23	100	55.1
第 6 類	布帛 및 同製品	49	160	48.5
第 7 類	紙·紙製品·書畫·書籍·印刷物	46	54	31.7
第 8 類	纖維 및 同製品	28	75	24.2
第 9 類	動植物·動植物產品 및 同製品	74	180	29.6
第 10 類	科學機器·樂器 및 銃砲	38	87	36.6
第 11 類	電氣機器·車輛·航空機·船舶·機械類	83	186	18.7
第 12 類	鑄·金屬 및 同製品	73	251	20.1
第 13 類	陶磁器·瑣璃 및 同製品	18	45	36.5
第 14 類	礦物·礦物料品 및 同製品	34	82	27.3
第 15 類	雜品	33	70	51.4
	合計		1,706	

較的 낮은 20.6%이며 第 4 類는 大部分이 國내에서 生產可能한 것으로서 平均稅率이 44.4 %로 높은 水準이며, 第 5 類는 輸入이 國내產業에 گ칠 영향을 고려하여 比較的 높은 稅率이 策定되어 55.1%로 되어 있으며, 第 6 類는 國내生產이 可能한 것으로서 역시 平均稅率이 높은 48.5%에 이르고 있다. 第 7 類는 大部分이 文化 및 教育와 關聯된 것으로서 平均稅率은 中間 程度의 31.7%이며, 第 8 類는 大部分이 生活必需品의 原材料로서 比較的 낮은 稅率인 24.2%이며, 第 9 類는 大部分이 天然生産物로서 中位 程度의 29.6%의 平均

稅率을 나타내며, 第10類는 高級機械類로서 平均稅率이 中位 程度의 36.6%로 되어 있으며, 第11類는 機械工業製品으로서 國內生產이 全無한 種類로서 輸入하지 않으면 工業生產에 支障이 있는 種類로서 全分類中 세번째로 낮은 稅率인 平均稅率 18.7%이다. 第12類는 原材料인 同時에 國內生產이 開發되지 못한 것으로서 平均稅率이 낮은 20.1%를 적용하고 있다. 第13類는 大部分이 完製品으로서 平均稅率이 比率的 높은 36.5%에 達하며, 第14類는 大部分이 建設資材 및 工業資材로서 低率이 적용되어 平均稅率은 27.3%이다. 第15類는 大部分이 完製品으로서 原資材나 生活必需品이 아닌 것으로서 平均稅率이 높은 51.4%에 達하고 있다.

이와 같이 原資材類 및 工業生產에 必需의 生產財의 輸入稅率이 낮게 採擇되었으며, 完製品類의 消費財 稅率이 높게 策定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自主的 經濟再編成을 爲한 關稅制度의 保護主義的 性格이 엿보인다고 評價할 수 있겠으나 再編成을 爲한 첫 出發을 하는 時點에서 뚜렷한 優先順位가 전혀 缺餘되어 있으며, 國內 經濟의 誘導的 要因이 뚜렷하지 못하며, 이 程度의 稅率策定은 生產의 收益性에 依하여 고 意義를喪失해 버리고 國民經濟의 構造的 改編과는 別度로 進展되고 마는 事實을 看過해서는 안 될것이다.

2) 戰爭과 關稅政策의 變化

1949年에 들어 오면서 부터 新關稅法의 制定으로 關稅制度는 점차 保護主義性格으로 再整備되어 갔으나 1950年 6月에 戰爭이 勃發하여 生產施設은 그나마 破壞되고 戰爭遂行을 爲한 巨額의 戰費支出로 인프레는 더욱 深化되어 各種財源은 破壞되었다. 그 結果 戰爭이 勃發한 1950年度에는 歲入總額이 歲出總額의 39%에 不過하게 되어 나머지 61%는 財政赤字로서 借入金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戰爭遂行을 爲하여 各種稅率을 4%乃至 100% 引上함을 內容으로 하는 臨時租稅徵收法을 制定 實施하게 되었으며 關稅政策도 財政關稅가 爲主로 되어 1950年 12月에 關稅臨時增徵法이 制定 公布되었다.

그 主된 內容은 輸入稅率表上의 無稅品目中 食糧과 書籍 等을 除外한 殘餘의 140餘品目에 對하여 從價 1割의 臨時關稅를 賦課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戰爭으로 因한 繁急財政收拾策의 一環이 있으며 이로 因하여 關稅政策은 保護主義的 性格에서 全的인 財政關稅政策으로 轉換하게 되었다. 이러한 財政難으로 말미암아 1950年 10月부터는 援助物資中 民需物資에 對한 關稅가 賦課되었으며, 이로써 關稅收入이 急增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것은 政府財政에 重大한 一翼을 擔當하게 되었다. 이러한 財政關稅政策의 또 한 表現으로서 이른바 市價逆算制가 採擇되었다. 當時 軍政時期에 採擇되고 있던 逆算法은 止揚되고 逐狀價格에 依한 到着價格算出法에 따라 關稅를 賦課하고 있었던 것인데 戰爭으로 因한 激甚한

인프레에도 不拘하고 公定換率은 그대로 維持하고 있었으므로 公定換率을 引上調節하지 않는 送狀價格에 依한 到着價格算出方法으로는 關稅收入에 莫大한 遺漏가 생기게 되어 不得히 市價逆算制로 還元할 것을 決定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1951年 4月에 市價逆算制가 採擇되어 一切의 送狀價格은 參考資料에 不過하게 되고 關稅의 市價調查에 依해 實際의 課稅基準으로 삼았던 것이다.

3) 新關稅法의 改正過程

1949年 11月에 制定實施된 新關稅法은 1950年代末에 이르기 까지 5次에 걸쳐 改正過程을 겪게 된다. 그 主된 內容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第1次 改正是 1951年 12月의 法律第229號로써 公布되었는데 그 主要 內容은 關稅官吏에게 司法警察權을 賦與하여 密輸團東을 效率的으로 處理하기 為한 것이었다.

第2次 改正是 1953年 10月 法律第296號로써 公布되었는데 主된 內容은 戰後 國內의 物資不足을 緩和하기 為한 手段으로 援助物資에 對한 免稅範圍를 擴大한 것과 航空機 및 船舶導入에 免稅規定을 新設한 것이다. 그리고 역시 汚濫하였던 密輸外來品을 團東하기 為한 罰則을 強化하였던 點이다.

第3次 改正是 1957年 1月 法律第429號로써 公布한 것인데, 그 主要 內容은 戰後 安定期를 맞아 다시 保護主義的 關稅政策을 反映시키고 있는 點이다. 即 主要 基幹產業의 設備用品에 對해서는 低率의 稅率을 適用하고, 國內產業施設이 土臺를 가진 生產品에는 保護關稅率을 적용하여 完製品은 半製品보다 더 높게 稅率을 策定하고, 또 半製品은 原料보다 높게 稅率을 策定한 것이다. 그리고 奢侈品에 最高率의 關稅를 적용하고 戰時의 關稅臨時增徵法을 廢止한 것 等이 特徵이었다.

第4次 改正是 1957年 1月의 法律第431號로 公布施行된 것인데, 이는 關稅犯處罰을 加重시키고 密輸防止를 為한 措置를 強化한 內容 뿐이었다.

第5次 改正是 1958年 12月의 法律第510號로서 公布施行되었으며 그 改正의 骨子는 同種物品間의 稅率不均衡을 是正한 것과 輸入品種의 增加로 因한 新規品目의 設定 및 細分化를 基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改正過程은 그 改正 內容自體가 말해 주듯이 當時의 時代的 要求에 뒤쫓아 臨機應變式의 改正이었음을 勿論이려니와 主된 것이 結局 密輸防止를 為한 것이었고 그 性格이 가장 뚜렷한 改正是 第3次의 改正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뚜렷한 政策方向의 指向이 缺餘되어 있었으며 國內經濟政策自體가 뚜렷한 指向點을 갖지 못하고 있었음을 그대로 反映하고 있다고 보겠다.

4) 關稅收入 및 關稅負擔率의 推移

政府樹立以後 1950年代末에 이르기까지 關稅收入 및 關稅負擔率의 推移를 보면 〈表69〉와 같다. 同表에 依하면 政府樹立後 1950年代末까지 우리나라의 3段階의 特性을 나타내

〈表 69〉 輸入額에 對한 關稅負擔率 經常價格 (單位: 억 원)

年度 區分	輸出額(A)	輸入額(B)	關稅收入(C)	C/B(%)
1949	—	—	0.01	—
1950	—	—	0.03	—
1951	—	—	0.5	—
1952	—	—	1.5	—
1953	7.2	45.9	3.5	7.6
1954	5.7	47.4	10.0	21.1
1955	8.7	111.7	22.5	20.0
1956	15.0	192.8	—	—
1957	16.0	224.9	23.8	10.5
1958	14.2	207.7	29.6	14.2
1959	19.2	209.6	35.5	17.0
1960	36.2	285.6	51.5	18.0

註 : 1949~1952年까지의 輸出入額은 系列化된 統計가 없어 空欄으로 둠.

資料 : 韓國銀行調查部, 「經濟年鑑」及「經濟統計年報」, 財務部, 「稅制改革白書」.

고 있다. 即 1949 年 부터 1953 年 休戰까지와 休戰으로 부터 1957 年 까지 및 1958 年 부터 1960 年 까지 이다.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9 年의 關稅收入은 1 百萬원에 不過하였고 戰爭末期의 1952 年에 와서도 1.5 億원에 지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政府樹立後 休戰에 이르기 까지 比較的 關稅收入이 增加된 해는 1951 年인데 그것은 戰爭으로 因하여 財政收入을 增加시키기 爲하여 關稅臨時增徵法을 施行한 것과 援助物資中 民需用物資에 課稅措置를 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1954年 부터 1957年에 이르기 까지는 輸入額의 急灌한 增加와 함께 關稅收入과 關稅負擔率도 대폭 增大하고 있다. 이는 龙大한 美國援助에 依하여 韓國의 產業을 再編成되고 있던 事情을 反映하고 있다. 商品分析에서 보아 온바와 같이 이때 輸入額의 大部分이 援助輸入에 依하였으며 이 援助輸入中 民需物資에는 關稅가 負擔되었고 結局 國內消費者는 間接消費稅를 負擔한 것이었다. 即 1954年度와 1955年度에 있어서 각각 21.1% 및 20.0%의 매우 높은 關稅負擔率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이 1957 年에 와서는 10.5%로 急激히 下落하는데 이는 同年 1月 1日에 關稅臨時增徵法을 廢止한데 主된 原因이 있었다. 그러므로 輸入額은 增加하였음에도 不拘하고 關稅負擔率은 半으로 低落되었음을 보여 주며, 免稅輸入이 얼마나 巨額에 達하고 있었는가를 말해 주고 있다고 보겠다.

그리고 1958 年 부터 1960 年에 이르는 期間에는 關稅負擔率이 如前히 높아 1958 年에

14.2%, 1959年에 17.0%, 그리고 1960年에는 18.0%를 示顯하고 있다. 1957年에 比하여 上昇한 것은 1958年末 第5次 改正時의 關稅率調整에 基因한 것이다.

이제 이러한 우리나라의 關稅負擔率은 當時의 世界主要國家의 關稅負擔率과 比較해 보면 〈表 70〉과 같은데 우리나라의 關稅負擔率이 얼마나 높은 水準이었는가를 보여 준다. 여기에서 英國, 獨逸, 伊太利, 3國은 關稅額中에 內國消費稅가 包含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比率을 나타내고 있으며 實質的인 關稅負擔率은 其他 先進諸國과 大差없는 水準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表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높은 保護關稅障壁이 國內產業을 保存하고

〈表 70〉 各國의 輸入額에 對한 關稅負擔率

國 (價額單位)	年 度	輸入額(A)	關稅額(B)	B/A(%)	備 考
美 國 (100 萬 弗)	1956	12,744	682	5.4	
	1957	18,141	735	4.1	
	1958	12,966	782	6.0	
卡 나 다 (100 萬 弗)	1956	5,705	481	8.4	
	1957	5,628	549	9.8	
	1958	5,192	498	9.6	
英 國 (100 萬파운드)	1956	3,886	2,170	55.8	關稅額中에는 內國消費稅가 包含되어 있음.
	1957	4,071	2,254	55.4	
	1958	3,780	2,314	61.2	
獨 逸 (100 萬마르크)	1956	27,780	7,277	26.2	關稅額中에는 內國消費稅가 包含되어 있음.
	1957	31,490	7,778	24.7	
	1958	30,910	8,148	26.4	
프 랑 스 (10 억 프랑)	1956	1,945	65	3.3	
	1957	2,245	89	4.0	
	1958	2,354	105	4.5	
伊 太 利 (10 억 리라)	1956	1,984	602	30.4	關稅額中 內國消費稅包含
	1957	2,296	661	28.8	
	1958	1,981	705	35.6	
白 耳 其 (100 萬 프랑)	1956	163,600	5,536	3.4	
	1957	171,600	6,000	3.5	
	1958	156,400	5,900	3.8	
和 蘭 (100 萬길다)	1956	14,156	721	5.1	
	1957	15,599	869	5.6	
	1958	13,774	830	6.0	
瑞 西 (100 萬프랑)	1956	7,590	740	9.7	
	1957	8,442	770	9.1	
	1958	7,330	785	10.7	

オーストリア (100 萬西郎)	1956	25,319	1,471	5.8	
	1957	29,339	1,730	5.9	
	1958	27,912	2,000	7.2	
日本 (10 억 圓)	1956	1,163	27	2.3	
	1957	1,543	46	3.0	
	1958	1,092	48	4.6	
韓國 (억 원)	1958	207.2	29.6	14.2	
	1959	209.6	35.5	17.0	
	1960	295.6	51.5	18.0	

資料：輸入額은 1959 年度 IMF 統計(IFS). 關稅額은 國聯統計(Statistical Year Book, 1958). 韓國의 統計는 前記表의 資料와 같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實은 輸出入의 역조를 繼續 深化시키어 輸入이 增大하고 있으며 美國援助輸入의 一方通路를 마련하고 있었음이 事實이다. 또한 이러한 高率의 關稅負擔率은 結局 國內 消費者의 間接消費稅로서 負擔지워지게 될은勿論이었다.

그러면 다음으로 關稅收入이 財政收入 및 租稅收入에 차지하는 比重을 檢討해 보면 〈表 71〉과 같다. 表에서 보면 1954年度 및 1955年度를 除外하고는 大部分이 8~9% 内外를 示顯하고 있다. 이 1954年 및 1955年은 戰後 復舊를 為하여 關稅臨時增徵法을 強力히 施行한 結果였다. 當時 國內產業 再建의 名目으로 法人稅와 內國稅가 減免되는 反面에 關稅에 치중하여 戰後 復舊를 為한 負擔을 지운 것은 그만큼 一般國民이 間接消費稅로서 負擔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958年以後 關稅收入이 財政收入에 차지하는 比重은 下落하

〈表 71〉 一般政府收入에서 차지하는 關稅의 比重 (單位: 억원)

年 度	一般政府收入(A)	關稅收入(B)	B/A(%)
1949	—	0.01	
1950	—	0.03	
1951	—	0.5	
1952	—	1.5	
1953	49.9	3.5	7.0
1954	72.5	10.0	13.8
1955	122.4	22.5	18.3
1956	235.2	未詳	—
1957	314.3	23.8	7.6
1958	345.1	29.6	8.6
1959	380.1	35.5	9.3
1960	486.9	51.5	10.6

資料：韓國銀行調查部, 「經濟統計年報 1968」.

韓國銀行調查部, 「經濟年鑑」 및 「經濟統計年報」.

財務部, 「稅制改革白書」.

〈表 72〉 各國의 財政收入에 對한 關稅負擔率

國 (價額單位)	年 度	財政收入(A)	關稅收入(B)	B/A(%)	備 考
美 國 (100 萬 弗)	1956	68,165	682	1.0	
	1957	71,029	735	1.0	
	1958	69,083	782	0.9	
卡 나 다 (100 萬 弗)	1956	4,272.6	481.2	11.3	
	1957	4,966.5	549.1	11.1	
	1958	4,894.2	498.1	10.2	
英 國 (100 萬파운드)	1956	5,115.7	2,170.7	42.4	關稅額과 間接消費稅額 을 合計하것 임.
	1957	5,373.5	2,254.8	42.0	
	1958	5,604.0	2,314.7	41.3	
獨 逸 (100 萬마르크)	1956	26,111	7,277	27.9	關稅額中 內國消費稅가 包含되어 있음.
	1957	28,198	7,778	27.6	
	1958	29,274	8,148	27.8	
프 랑 스 (10 억 프 랑)	1956	3,261	65	2.0	
	1957	3,653	89	2.4	
	1958	4,136	105	2.5	
伊 太 利 (10 억 리 라)	1956	2,571.5	602.5	23.4	關稅額에 는 內國消費稅 가 包含되어 있음.
	1957	2,895.0	661.8	23.2	
	1958	2,879.9	705.1	24.5	
白 耳 義 (100 萬 프 랑)	1956	90,298	5,536	6.1	
	1957	94,672	6,000	6.3	
	1958	98,269	5,900	6.0	
和 蘭 (100 萬 길 다)	1956	7,005	721	10.3	
	1957	7,559	869	11.5	
	1958	7,357	830	11.3	
瑞 西 (100 萬 프 랑)	1956	2,610.6	740.1	28.3	
	1957	2,440.3	770.2	31.6	
	1958	2,715.4	785.8	29.0	
오 스 트 리 아 (100 萬 쌈 링)	1956	28,318	1,471	5.2	
	1957	33,174	1,730	5.2	
	1958	35,295	2,000	5.7	
日 本 (10 억 원)	1956	1,033	27	2.6	
	1957	1,188	46	3.9	
	1958	1,229	48	3.9	
韓 國 (1 억 원)	1958	345.1	29.6	8.6	
	1959	380.1	35.5	9.3	
	1960	486.9	51.5	10.6	

資料：國聯統計(Statistical Year book, 1958), 韓國銀行調查部, 「經濟統計年報」, 「經濟年鑑」。

였으나 여전히 9% 内外에 머물고 있어 外國의 例에 比較하면 〈表 7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시 낮은 水準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면 財政收入의 大宗을 이루는 租稅收入의 總額에서 關稅收入이 차지하는 比重을 보면 〈表 73〉에서 보는 바와 같이 政府樹立 以後 混亂期에 있어서는一般的으로 낮은 水準

〈表 73〉 租稅收入總額中에서 關稅收入의 比重 (單位: 百萬원)

年 度	租稅收入額(A)	關稅收入額(B)	B/A(%)
1 9 4 9	13.6	1.4	10.3
1 9 5 0	42.7	3.4	8.0
1 9 5 1	392.4	45.1	11.5
1 9 5 2	966.0	146.8	15.2
1 9 5 3	2,156.6	350.9	16.2
1 9 5 4	5,143.0	998.3	19.4
1 9 5 5	10,938.1	2,245.3	20.5
1 9 5 6	—	—	—
1 9 5 7	11,589.8	2,376.3	20.5
1 9 5 8	14,348.7	2,963.9	20.6
1 9 5 9	21,597.6	3,554.6	16.4
1 9 6 0	24,611.5	5,145.0	20.9

資料：韓國銀行調查部，「經濟年鑑」，「經濟統計年報」。
經濟企劃院統計年報。

이었으나 戰後 再編成期에 있어서는 約 20%의 水準을 維持하여 租稅總額에 對한 關稅負擔率이 높은 水準임을 알 수 있다. 이는當時 우리 나라의 關稅가 財政收入의 重要한 源泉임을 말해 주고 있으며 關稅制度의 性格이 財政關稅의 性格을 濃厚하게 띠고 있음을 立證하는 것이라 하겠다.

V. 直接 統制 및 奨勵政策

1. 日帝下의 直接 統制 및 奖勵政策

植民地 朝鮮의 貿易政策은 朝鮮經濟의 內的 要求와는 相關없이 日帝의 植民地政策의 經濟的 與件에 依하여 움직여져 왔음은 이미 보아온 바와 같다.

朝鮮의 貿易統制政策 역시 日本帝國主義經濟의 對內外的 政策에 追從할 뿐이었고 그 獨自의 性格이란 전혀 意味를 갖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朝鮮에 있어서 貿易統制政策은 어디까지나 日本帝國主義經濟의 對內外的 與件에 依하여 움직여왔음에 지나지 않는다.

日帝는 1920年代末 世界大恐慌에 當面하여 國內產業의 保護 및 不況打開를 為해 關稅障壁을 높이는 等으로 全般的 輸入에 對하여 保護主義의 關稅政策으로 대처하는 한편 輸出獎

勵政策을 強力히 圖謀하였다. 即 1927年에 關稅法의 一般的 改正과 1929年的 關稅障壁의 強化 等으로 關稅政策에 依하여 輸入을 調節하였다. 한편 輸出은 원래 無稅였으므로 關稅政策으로는 限界에 達하고 있었기 때문에 輸出補償法, 輸出組合法, 重要輸出品検査制度等을 實施하고 輸出促進을 為한 海外宣傳, 貿易通信員 等을 強化하여 輸出獎勵에 積極 努力하였다. 그러나 當時 朝鮮의 事情은 外國貿易이 日本과의 關係가 거의 全部였으므로 世界大恐慌에 當面한 대처手段은 日本經濟가 恐慌으로 超來한 負擔을 轉稼받는 方向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即 關稅障壁을 높인 日本과는 對照的으로 1927年에는前述한 바의 輸入最大品目인 對日綿織物輸入을 3分의 1 減稅措置하는 形態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日本을 除外한 第3國과의 貿易關係가 거의 없었으므로 輸出獎勵에는 關心이 있을 수 없었다.

그런데 日帝가 1931年 滿洲侵攻으로 恐慌의 打開策을 마련하자 植民地 朝鮮도 滿洲에 對한 對外 貿易關係가 成立되게 되었고 더욱 1937年 中日戰爭이 있게 되고 부터는 中國과의 貿易關係도 形成되어 對外貿易의 振興에 外的 環境이 助成되었다. 그리하여 1933年 6月에 社團法人 朝鮮貿易協會가 設立된 것이었다.

1) 輸出入 臨時許可規則의 施行

日帝는 1937年 7月 中日戰爭을 도발하고 世界情勢을勘案하여 그 結果 同年 9月에 드디어 「輸出入品에 關한 臨時措置法」을 公布하게 되고 뒤이어 同年 10月에는 「臨時輸出入 許可規則」을 公布・實施하게 되었다. 이는 순전히 戰爭을 有利하게 隨行하기 為하여 制定된 것이었으며 同措置法은 朝鮮總督府에 依해 朝鮮에도 强權의으로 원용, 執行하게 되었다.

1937年 10月 朝鮮總督府는 府令第153號에 依해서 臨時輸出入許可規則, 即 「輸出入 等에 關하여 臨時措置에 對한 法律第1條에 依한 命令」을 公布하였다. 그 内容을 보면 다음과 같이 要約해 볼 수 있다.

첫째, 重要輸出品으로서 어느 程度의 輸入制限을 加해야 할 物品을 甲號 品目으로 指定하여 輸入을 許可制로 하였으며 同品目의 種類는 實綿, 緑綿, 羊毛, 駝毛, 山羊, 駱駝 및 木材 等이 있다.

둘째, 不要品 또는 不良品으로 輸入을 禁止할 것을 乙號 品目으로 指定하여 輸入을 許可制로 하였으며 同品目의 種類는 植物外에 268品種이 包含되었다.

세째, 國內에서 特히 供給을 確保하기 為해 輸出을 禁止할 品目을 丙號 品目으로 指定하여 輸出을 許可制로 하였으며 同品種은 大麥外 12品種이 該當되고 있었다.

네째, 甲乙丙號 品目으로서 郵便物 및 官用, 外交官用品은 許可를 必要로 하지 않는다.는 但書를 規定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臨時輸出入許可規則은 以後 여러 차례 改正過程을 거쳐 日帝의 敗亡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 그 改正過程을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第1次 改正：1938年 3月에 甲乙丙號 品目 以外에 丁號品目을 追加하여 銅外非鐵金屬에 對한 輸入을 許可制로 하였다.

② 第2次 改正：1938年 6月에 丁號 以外에 戊號 品目을 設定하여 編製에 對한 當時의 滿洲, 關東州, 中國에 對한 輸出을 許可制로 하였다.

③ 第3次 改正：1938年 8月에 輸入制限으로 外換管理를 간편화 하기 為한 改正이었으며 輸出入制限物品에 對한 各號의 全面的改編을 가져왔다.

④ 第4次 改正：1939年 9月에 日帝가 對圓貨幣 輸出調整을 為한 承認制를 採擇한 것에 依해서 朝鮮은 臨時 輸出入許可規則의 別表에다 輸出實績表를 追加해서 이를 基準으로 數量統制를 하게 한 것이었다.

⑤ 第5次 改正：1940年 8月에 從來에는 別表 乙號에는 許可를 要하는 品目을 揭載하였는데 이번 改正에는 乙號에 揭載된 것을 除外한 大部分의 品目에 許可를 받기로 改正하였다.

⑥ 第6次 改正：1941年 7月에 對圓貨幣 輸出의 數量과 價格을 調整하기 為하여 朝鮮東亞貿易株式會社를 調整機關으로 設定하고 同機關에 滿洲, 關東州中國의 輸出을 許容하기로 하였다. 이는 當時에 日帝가 美國, 英國의 對日 資產凍結措置에 부딪쳐 從來의 美·英에 對한 依存的 體制에 벗어나 東亞에서 圓貨幣 經濟를 編成하지 않을 수 없었던 帝國主義 相互間의 모순의 激化에 依한 것이다. 그리하여 大東亞共榮圈貿易을 高唱하면서 불리經濟를 指向하였으나 그 反面 外貨稼得에 광분하게 된 自家撞着에 빠지고 탈게 된 것이다.

⑦ 第7次 改正：1942年 7月에 從來의 乙號品目 以外의 對圓貨幣 全輸出品을 朝鮮總督의 許可制로 改正한 것이었다. 이는 戰爭突入으로 日本이 完全히 英美에 依해 國際的으로 包圍되자 外貨稼得自體가 意義를喪失하여 그들 植民地을를 바탕으로 所謂 自給自足的大東亞共榮圈을 만들지 않을 수 없었던 實情을 反映하는 것이 있다.

⑧ 第8次 改正：1942年 7月에 食糧管理法의 施行에 따라 米, 大麥, 小麥等은 그 輸出入調整을 朝鮮米穀市場株式會社에 擔當시켜 本令 別表乙號에 이러한 品目을 追加하는 대身 丙號品目에서 大麥과 小麥을 削除한 措置였다.

이와 같은 諸改正過程은 總體的으로 보아서 日帝의 戰時體制에로 輸出을 치는 内容을反映하고 있다고 보겠다.

2) 圓域輸出調整令과 그 轉換.

滿洲事變以來 日本의 對圓貨불리輸出은 植民地建設을 為한 措置와 並行하여 急激히增加하였으나 實際에 있어서 外貨獲得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을 뿐아니라 反面에 日本國內에 極甚한 物價上昇을 超來하여 第三國間의 輸出計劃이 不進하게 되고 國民生活安定에 難跌을 가져왔다. 따라서 日帝는 이를 抑制하지 않으면 안될 自家撞着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日帝는 1939年 9月에前述한 臨時措置法에 根據하여 圓域輸出調整令을 公布하고 朝鮮에 있어서도 日本과 마찬가지로 對滿洲, 關東州, 中國에 輸出制限品目을 指定하였으며, 이들 指定品目은 全部 臨時輸出入許可規則의 別表 乙號에 追加하여 許可制로 하였다.

이러한 對圓貨地域輸出入調整은 처음은 數量調節을 위주로 한 것이었는데 價格統制를 並行하지 못하여 日本과 滿洲間의 物價差에 依하여 여전히 輸出이 增大되고 있었으므로 따라서 從來의 數量調節에 다 價格調整을 並行시키게 되었다.

即 1940年 9月에 日帝는 商工省令에 依해 日本東亞輸出入組合聯合會로 하여금 對圓貨불리 輸出入物資의 價格을 調節하게끔 하였으며 朝鮮에 있어서는 社團法人朝鮮貿易會로 하여금 그 取扱을 代行시켰으나 1941年 4月에 朝鮮東亞貿易株式會社를 創立하여 總督府에서直接으로 調整事務를 관장하게 되었다.

i) 朝鮮東亞貿易株式會社의 관장事務는 첫째, 圓域間 輸出品의 買入 및 輸出, 둘째, 圓域으로 부터의 輸入品의 販賣 및 輸入, 圓域輸出入物資의 價格調整, 및 이들에 부합되는諸般事業을 遂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리하여 從來의 自由去來의 觀念은 完全히 사라지고 國家가 直接 貿易을 擔當하는 擔當者가 되었고 貿易政策은 完全히 國家計劃貿易段階로 들어 서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對圓貨불리 輸出調整은 結果的으로 第3國間 輸出을 減退시켜 外貨稼得에 莫大한 支障을 超來하게 되었으므로 日帝는 1940年 7月에 日滿支貿易計劃을 세워 對圓域輸出은 第3國間 輸出의 確保를 第1義로 하고 그 剩餘를 輸出하는 所謂 剩餘輸出의 原則을 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1940年度 以後 日帝는 단순한 輸出振興策보다는 한결음 더 나아가 戰爭準備를 為한 必需物資의 輸入確保가 第一義로 등장하게 되었다.前述한 바와 같이 帝國主義相互間의 對立으로 日帝는 美英依存體制로 부터 所謂 大東亞共榮圈의 確立에 광분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는 日帝의 對圓貨불리 貿易體制에 一大轉換을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從來의 剩餘輸出概念으로 부터 戰爭遂行에 支障이 없는限 最大限 輸出을 圖謀할 方針으로 轉換된 것이다.

3) 第3國貿易調整令

上述한 바와 같은 日帝의 貿易統制政策의 整備는 自國의 貿易改善에相當한 效果를 가져 왔으나 原資材輸入의 制限, 美英의 防衛政策, 世界的인 排日感情, 잇따른 不況 等으로 輸出은 不進하였고 原資材의 大量은 比率을 外國에 依存하고 있던 日本工業構造로서는 莫大한 外貨獲得에 광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日帝는 1938年 頃부터 輸出振興의 諸方策을 강구하여, 輸出入링크制, 外貨基金의 設定, 輸出用 原資材配給機關의 設立, 輸出補償制度 等이 實施되었으며 日本貿易振興株式會社가 設立되었다. 朝鮮에 있어서도 이러한 日帝의 方針에 따라 1941年 1月 朝鮮總督府令 第6號로서 「第3國貿易調整令」을 公布하였다.

이러한 第3國輸出振興을 為하여 1941年 3月에 朝鮮貿易振興株式會社를 設立하고 輸出用 原資材의 確保 및 配給, 輸出資材의 國內流用防止, 輸出品의 質的改善等 輸出獎勵政策을 擔當케 하여 國家的 統制下에 外貨獲得에 全力を 다 하였던 것이다.

4) 貿易統制令의 實施

日帝는 戰爭에 突入하게 되자 保護經濟를 戰時動員體制로 轉換하고 戰爭經濟遂行에 支障이 없는 方向으로 積極 統制를 강구할 目的으로 方針을 轉換하게 되었다.

中日戰爭以來 日本의 貿易統制는 主로 輸出入品 等에 關한 臨時措置法에 依據한 命令으로 遂行되었던 것인데, 이 臨時措置法으로는 輸出入의 制限 및 禁止는 可能하였으나 輸出入에 關한 積極命令은 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輸出入의 積極命令은 戰時國家總動員法에 依할 수 밖에 없게 되었으므로 國家總動員法 第9條에 “政府는 戰時に 國家總動員上 必要할 때에는 勅令으로 輸出入을 命할 수 있다”라고 規定하였다. 이에 依據하여 1941年 5月에 「貿易統制令」을 公布하여 日本에 實施하는 한편 朝鮮에도 바로 施行하기에 이르렀다. 同 貿易統制令은 戰時經濟를 為한 綜合的 計劃貿易에의 脊椎적인 轉換을 具體화한 것으로서 그 内容을 要約하면, 即 朝鮮總督은 品目을 指定하여 輸出入의 制限 또는 禁止를 命할 수 있게 되었으며 其他 指定한 物品의 讓渡, 處分, 所持 및 移動에 關한 條件을 規定할 수 있게 되었다(同法第4條).

이리하여 從來의 貿易統制方法은 根本의으로 改正되어 朝鮮總督府에 強力한 統制權이 附與되었고 戰時를 為한 完全한 計劃貿易이 이루어진 것이다.

2. 美軍政下의 直接統制政策

解放直後 1945年 9月 美軍進駐와 함께 美軍政當局은 “軍政廳의 正式發布가 있을 때까지 南韓美軍駐屯地域과 그外 地域間의 物資交流, 通貨交流, 旅行 等은 軍務上의 必要에 依한

美軍司令官의 許可없이는 行할 수 없다”라는 談話文을 發布하여 貿易을 強力히 統制할 方針을 밝혔다. 그리하여 1946年 1月 3日 美軍政法令 第39號로 「對外貿易規則」을 公式法令으로 發布하였다. 同軍政法令 第39號의 對外貿易規則에서 밝힌 貿易統制政策의 性格을 보면 38度線 以南의 韓國과 다른 地域과의 貨物 및 財產의 運輸는 그 許可의 轉換이 美軍政長官이나 그 代理者에게 있고 그들의 許可없이는 自由로운 對外去來를 一切 禁한다는 것 이었다. 同 對外貿易規則의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 i) 韓國에로 또는 韓國으로 부터의 空路, 陸路 및 海路에 依한 모든 貨物 또는 財產의 運輸는 美軍政長官 또는 美軍政廳의 正式許可한 者以外에는 이를 禁止한다(同令第1項).
- ii) 韓國에로 또는 韓國으로 부터 空路, 陸路, 및 海路로 航空機, 船舶, 自動車 또는 動力機關에 依해 모든 貨物 및 財產을 運輸하는 것은 美軍政長官 또는 美軍政廳의 正式許可한 者以外에는 이를 禁止한다(同令第2項).
- iii) 韓國에로 또는 韓國으로 부터 貨物 또는 財產의 運輸는 美軍政官 또는 美軍政廳이 指定한 目的을 為하여 指定한 港口 또는 空港을 경유하는以外에는 이를 禁止한다(同令第4項).
- iv) 本令의 規定을 犯하는 者는 美陸軍占領地域裁判所에서 有罪判決을 받는 同時に 所定의 刑罰에 處한다(同令第9項).
- v) 本令은 1946年 1月 12日 24時에 效力を 發生한다(同令第10項). 그리고 以外에도 同年 5月에서 7月까지 法令第82號 및 第98號가 公布되었고 同年 7月 12日에는 外國貿易規則 第1號, 1947年 6月 20日에는 外國貿易規則 第2號 等이 繼續하여 公布되었는데 이들의 內容은 對外貿易을 完全히 美軍政廳의 統制下에 두고 許可制를 實施한다는 것과 軍政廳의 貿易代行機關으로 貿易局을 두어 輸出入許可事務를 관장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當時의 對外貿易도 完全히 軍政廳의 統制下에 極히 制限된 範圍內에서 이루어 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 後 1947年 8月 南朝鮮過渡政府가 樹立되어 軍政法令은 다소 廢止乃至 改正되었으나 外國貿易을 強力히 統制한 政策에는 變함이 없었으며 輸出入貿易에 對해서 그때 그때마다 南朝鮮過渡政府 商務部 貿易局의 免許를 받도록 하였다. 即 1947年 8月 商務部令 第1號로서 「外國貿易規則」을 公布하였는데 그 內容을 보면 南韓의 輸出入 및 모든 物品에 對하여는 免許를 要하게 하였으며(同令第3條)輸出入品目에 對해서는 同貿易局에서 作成한 輸出入表에 登載된 品目에 限하였으며(同令第4條, 附項)모든 外換去來는 朝鮮換金銀行이 專擔하여 이를 統制한다(同令第4條, 附項)고 規定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美軍政期의 韓國貿易은 解放前의 戰時體制化된 產業經濟를 平和產業體制로

轉換하여야 할 莫重한 經濟的 餘件에도 不拘하고 自主的인 政府樹立이 되지 못한 結果, 民間貿易은 거의 방치되어 버렸으며 다만 公貿易形態인 官管貿易만이 이루어 진데 不過하였다.

3. 政府樹立과 直接統制 및 奨勵政策

1948年 8月 15日 大韓民國政府가 樹立되자 1947年 8月부터 實施해온 輸出入許可制를 그대로 踏襲實施하기로 基本方針을 세웠다. 그러나가 1949年 2月에 와서는 從來의 質的 統制위주의 輸出入 許可制만으로는 輸入商品을 調整하기가 困難하였으므로 輸出入商品의 量的統制를 加할 目的으로 「쿼타(Quota)制度」를 實施하였다. 即 輸出入量의 割當制度를 全面적으로 採擇・實施한 것이다. 이 輸入쿼타制度는 當時 政府의 綜合物動計劃에 依據하여 物資需給의 圓滑을 기하려는데 目的이 있었으며 1955年 8月 15日에 廢止되었다.

그리고 1951年에는 間接的인 輸出補償制度의 一種인 特惠外換制度를 實施하여 57種의 輸出品에 對하여 1~10%의 輸出補償率을 許容하여 輸出振興策을 圖謀하였다. 이는 1952年에는 最高 20%까지 引上하고 對象品目도 全般的으로 再調整하였으며 1953年에는 다시 最高 50%까지 引上하였으며 對象品目도 67種으로 擴大하였다. 1952年에는 比較的多角的貿易政策이 시도되어 同年 5月에는 求償貿易制度가 採擇・實施되었으며 1954年 6月까지 持續되었다. 이는 輸出不振品目의 販路確保를 為하여 特定商品輸出과 輸入採算率이 높은 特定輸入商品을 링크시킨 것이었다. 그리고 同年 10月에는 輸入政策으로서 直輸入原則과 輸出入 링크制度가 導入되었다. 여기에서 直輸入原則이라함은 과거의 廣泛적인 對日貿易으로 부터 벗어나 보다 低廉하고 優秀한 商品을 原產地로 부터 直輸入하도록한 措置였으며, 輸出入 링크制度는 輸出로써 獲得한 外貨는 반드시 各種生產財를 輸入하도록 對象輸入品目을 指定한 措置였다. 그리고 1952年에는 外貨貸付制를 實施하여 輸出振興과 必要한 物資導入을 促進시키려고 시도하였다. 同年 12月 17일에 「特別外貨貸付取扱規程」을 新設하여 第1特別外貨貸付制와 第2特別外貨貸付制를 規定하였다. 第1特別外貨貸付制는 登錄貿易業者에게 輸出實績을 고려하여 外貨를 貸付해 줌으로써 間接的으로 輸出振興을 도모하고 適切하게 國內通貨를 積立시킴으로써 通貨를 收縮하는 한편 物資의 導入을 促進하여 國內物價의 安定을 期하기 為한 名目이었다. 그리고 第2特別外貨貸付制는 主務部長官이 推薦하는 實需要者에게 外貨를 貸付 함으로써 必要한 生產施設 및 附屬品을 輸入하여 國내產業을 振興하고 適切한 通貨를 積立케 함으로써 通貨吸收를 圖謀하기 為한 名目이었다.

이러한 外貨貸付가 事實上 當時 極甚한 인프레의 狀況에서 어느 程度 所期의 成果를 達

하였을까는 그 後의 事實이 證明하고 있다고 보겠다. 말하자면 輸出振興은 微微하였을 뿐 아니라 輸出에 依한 物資導入은 形式에 不過하였으며 通貨收縮效果 역시 當時의 인프레狀況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던 것이다.

反面에 當時 小數의 輸出業者 및 實需要者들에게 貸付된 外貨는 輸出에 依하여 利潤을 積得한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國內物價昂騰에 따라 莫大한 超過價值를 增加시키고 있었던 것은 周知의 事實이었다.

休戰과 더불어 對內的으로 인프레의 昂進과 對外的으로 國際市場價格의 下落으로 말미 암아 萎縮一路를 걷고 있던 輸出을 振興시키기 為하여 特惠外貨制度, 輸出補償金制度, 求償貿易制度의 擴大實施 및 輸出弗優待制度 等의 輸出獎勵政策을 實施하였다.

特惠外貨制度는 輸出品目에 따라 各種特惠換率을 適用함으로써 收益性이 높은 特定物品을 輸入할 수 있도록 하여 輸出을 補償하려는 制度였다. 1953年 末까지는 66種의 特惠對象品目에 對하여 最低 40%로 부터 最高 50%까지의 特惠率을 賦與하고 있는데 1954年 下半期「퀴타」에 있어서는 輸出品目的 거의 全部인 76種을 特惠輸出對象品目으로 定하고 甲, 乙, 丙 3種으로 區分하여 각각 50%, 40% 및 30%의 特惠率을 賦與하였다. 한편 新規輸出市場의 개척을 奬勵하기 為하여 新地域에 對한 輸出品과 新規輸出品에 對하여는 前記 特惠率과 關係없이 輸出額의 80%를 特惠率로 賦與하였다. 그 外에도 과도한 對日 貿易不均衡을 是正하기 為하여 清算地域 以外의 其他地域에 對한 輸出品에 對하여는 所定特惠率의 20%를 追加賦與하였던 것이다. 1955年 上半期에는 重石輸出을 乙種特惠輸出對象品目으로 追加하는 한편 新規輸出品 및 新地城에 對한 輸出品에 適用하였던 特惠優待率을 廢止하였으며 特惠對象品目的 輸入은 清算地城을 除外한 其他地城에 限하여 許可하도록 하였고 收益性이 높은 奢侈品類를 輸入品目에서 대폭 削除하였으며 1955年 8月 15일을 期하여는 드디어 이 特惠外換制度는 全面的으로 廢止되었다.

이리하여 1955年 8月 15일에는 지금까지의 輸出入許可制度도 드디어 撤廢되고 또 商工部에 依한 從來의 輸出入 許可制度가 廢止되어 輸出은 稅關이, 輸入은 韓國銀行이 그 業務를 擔當하는 一種의 自動承認制度가 採擇된 것이다.

이로 부터 貿易政策은 同年 8月에 對日本 貿易 全廢止를 宣布한 경우를 除外하면 直接統制政策과 關稅政策은 함께 本流를 이루었다.

한편 輸出補償金의 交付對象品目에서는 高領土, 蛻石, 및 乾魚 等의 다섯品目이었는데 當時 過重한 軍事費의 支出로 每年 巨額의 赤字豫算이 累增되어 經續的인 輸出補償金의 支給은 어렵게 되었으므로 1955年度豫算에는 引上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56年에는 다

시 輸出增進을 爲해 輸出獎勵補助金交付規則이 制定되어 每年 豫算範圍內에서 輸出缺損額을 補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시 1957年 12月에는 對外 貿易의 基本法이 될 貿易法이 制定되고 1958年 3月에는 同 貿易法施行令이 公布되어 지금까지 雜大했던 美軍政法令 및 商工部令에 依해 統制되어 오던 貿易行政이 整備되었다. 1957年的 貿易統制 및 獎勵政策의 特徵을 보면 輸出品目은 國內經濟事情을 參酌하여 重要한 品目에 對해서만 輸出禁止乃至 制限措置를 取하고 其他品目에 대해서는 積極的으로 輸出을 獎勵하였으며, 輸入에 있어서는 國內에서 供給可能한 品目은 全的으로 輸入禁止措置를 취하고 國內生產이 需要에 不足하거나 需給事情에 差跌을 招來할 우려가 있는 品目은 事前承認制를 擇하였다. 그러나 物價安定 및 物價需給計劃의 圓滑이라는 口實아래 輸入禁止品目과 輸入制限品目이 別度公告로써 輸入할 수 있도록 例外적인 措置가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事實은 結局 臨機應變式의 統制政策으로 歸結되었고 名目上 趣旨에 따른 一貫性 있는 統制政等이 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1958年 부터는 새로 制定・實施된 貿易法에 依據 貿易計劃이 公布되었는데, 從前에는 明示하지 않았던 輸出許用品目과 輸出禁止品目을 明示하였으며 援助物資도 一但 貿易計劃品目으로 表示하였다.

다음으로 1958年 및 1959年的 輸出獎勵政策을 보면 輸出獎勵品目으로 마른굴, 참치, 生豚, 豚毛, 및 工藝品의 5品目을 定하여 10~20%의 特惠率을 定하였다. 그리고 輸出振興政策의 一環으로서 主要輸出物資에 對하여 鐵道運賃을 割引하였는데 1958年中에는 6個品目的 鑛產物에 10~40%를 割引하였고, 1959年에는 주로 鑛產物과 紡布를 包含한 8個品目에 一律的으로 30%를 割引하였다. 한편 1959年 末에는 對充資金 2億圓을 輸出振興基金으로 韓美合同經濟委員會에서 合議하여, 輸出物資를 生產 또는 加工하는 企業體에 輸出品의 生產 및 加工에 所要되는 費用의 75%以內에서 金利 年10%로 融資하게 되었으나 그 施行은 次年度인 1960年으로 넘어 가게 되었다.

VII. 外換管理政策

1. 日帝下의 外換管理政策

1) 外換管理法의 施行

日帝下에 있어서 朝鮮의 外換管理政策이 日帝의 外換管理政策에 附隨되어 그 存在意義를 가진 것은 前述의 餘他의 다른 政策과 同一하다.

日帝의 外換管理政策은 1931年 末의 金輸出再禁止措置 前後에 盛行하게 된 달러 投買를

防止하기 爲하여 制定된 1932年 7月의 資本逃避防止法으로 遷及되어 진다. 植民地 朝鮮에 있어서도 이로 因하여 並로서 外換管理政策이 導入되어 朝鮮總督府의 勅令으로 施行되기 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는 外貨證券投資形態의 資本의 海外逃避를 防止하는 것이 主目的 이어서 外國貿易 等을 通한 資本의 逃避 및 移動에 對해서는 管理가 거의 不可能하였다. 當時 滿洲事變 以來 急變해 온 國際情勢에 따라서 外國各域에 間接的인 統制가 始作되고 부터는 外換에 있어서도 좀 더 積極的인 管理가 要求되었다. 그리하여 1933年 3月에 새로 이 外換管理法을 制定하여 資本의 海外逃避를 徹底히 防止하고 換時勢를 암박하는 諸要因 을 除去할려고 하였다. 따라서 同法의 內容은 外換의 賣買, 金輸出, 海外送金, 外貨表示 有價證券의 賣買, 信用狀의 發行 및 取得, 證券의 輸出入 및 無換輸出等 廣範圍한 領域에 걸쳐 制限乃至 禁止規定을 갖고 있었다.

그後 中日戰爭의 勃發에 隨伴하여 經濟的 諸情勢가 變動하게 되자 本法은 점차로 그 內容을 強化하여 戰時經濟體制에 相應하도록 全面的인 改正을 斷行하였다. 1941年 4月의 改正法은 當時 在外預金 및 證券 等의 財產이 美英에 依해 凍結되고 있던 事情을 고려하여 그 危險을 防止하고 이를 保全活用하기 爲하여 더욱 廣汎한 統制權을 規定한 것이다. 即 在外財產 및 外貨資產에 對한 政府의 命令權의 強化, 對外決濟方法의 統制強化, 外換銀行以外의 決濟方式統制 및 日本內 外國人資產의 取締強化等으로 對外 經濟去來에 關聯 있는 諸般事項을 政府의 統制下에 두고 必要한 경우에는 언제나 強權을 發動할 수 있는 防備陣을 갖춘 것이다.

2) 輸入換의 許可制實施

朝鮮總督府는 外換管理法의 施行과 同時に 如何한 去來 또는 行爲를 制限乃至 禁止하는 實體規定을 府令으로 制定하여 1933年 4月에 「外換管理法에 依한 命令」을 公布함과,同時に 「外換管理法에 關한 手續」이 公布되었으며 다시 1937年 1月에는 「外換管理法에 依한 臨時措置에 關한 件」을 府令으로 制定·公布하여 所謂 輸入換許可制를 實施하게 된 것이다. 이는 當時 世界的인 인프레와 保護關稅障壁의 趨勢 및 基準外換時勢의 維持困難 等 經濟的 狀況에 對應하기 爲한 短期的 手段이었으나 곧이어 勃發한 中日戰爭으로 因하여 그 效力이 繼續하여 存續하였다. 그 內容의 概要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輸入品代金決濟를 爲한 換去來의 許可制 및 信用狀取得의 許可制를 規定하였으며,

둘째, 無換輸出代金을 輸入品代金決濟에 充當할 경우도 許可를 要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外貨資產을 擔保로 하여 外貨借入을 하는 경우도 許可制로 하였다.

네째는, 50萬圓以上의 輸入高는 代金決済實績報告書를 提出케 하였다. 이와 같은 外換政策은 前述한 貿易統制 및 獎勵政策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戰時에 臨하게 된 日帝는 自由工業構造가 龙大한 對外原材料依存度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外貨獲得 및 外貨節約에 광분하지 않을 수 없었던 與件과도 相應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輸入換許可制는 日帝의 戰時體制突入과 함께 繼續 改正強化되었으며 1941年 1月에는 美英等의 對日 資產凍結措置에 對抗하여 그 보복手段으로서 外國人關係去來取締規則을 朝鮮에서도 總督府令 第 218 號로 制定・公布하게 되었다.

그러나 1941年末 日帝가 2次大戰에 本格的으로 突入하게 되자 事態는 더욱 急迫하게 되어서 圓貨불리經濟의 自給自足的 運營을 為한 外換管理體制가 樹立되게 되었다.

3) 圓貨불리 外換政策의 樹立

2次世界大戰의 所謂 太平洋戰爭이 始作되자 日帝는 自己의 植民地圈이었던 朝鮮, 滿洲, 關東地方, 中國一部에 對하여 美英에 完全히 分離된 圓貨通用體制를 確立하고 圓貨中心의 外換政策을 새로이 確立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1941年 12月 20日에 新外換政策을 發表하였으며 朝鮮에 있어서도 同年 12月 31日에 府令第 345 號로서 外換規則을 公布하고 朝鮮總督府가 指定한 外換時勢에 依하지 않고는 外換去來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自由主義的 經濟體制에 있어서는 주로 國民經濟의 狀況, 輸出入貿易의 均衡, 國際間 資本移動關係等에 依해서 外換管理政策이 樹立되며 外換時勢도 그 自體가 經濟的 背景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日帝下의 朝鮮의 外換管理政策은 日帝의 戰時에 대비한 戰爭經濟編成과 함께 遂行되었으며 外換管理政策이 이에附隨된 要因以外에는 다른 經濟的要因에 依해 左右된 것은 거의 없다고 보겠다.

2. 解放後의 外換管理政策

1) 二重換率制度의 實施

解放과 더불어 1945年 10月 美軍政當局은 當時의 朝鮮銀行券인 圓貨와 美貨와의 換率을 設定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最初로 1美弗當 0.015 원(當時 15 圓)으로 換率을 設定하여 對民間債務支給에 適用하였다. 同換率은 1947年 7月에 0.05원으로 引上하였고 1948年 10月에는 「韓·美間 換金에 關한 暫定協定」에 依據하여 다시 1美弗當 0.45 원으로 引上되었다. 그리고 1948年 12月에는 「韓·美間 援助協定」에 依하여 對充資金換率이 當時의 換率과 同率인 1美弗當 0.45원으로 確定되었다. 그後 政府樹立과 함께 1949年 6月에 「對美貿易去來 및 外國換取

「規則」이公布되어換率政策은公定換率과一般換率로區分되어施行되었다.公定換率은從前의1美弗當0.45원이適用되었고一般換率은1美弗當0.9원이策定되었으며,一般換率은外換競賣制에依하여形成된實際換率을反映시킬目的이었던것이다.

政府樹立後外換管理政策은1950年6月에創立된國策銀行인韓國銀行이全擔하게되어對外決濟準備資金의管理및一般外換業務를擔當하였다.

그리하여外換은韓國銀行에全面적으로豫置되어集中되었고政府外換計定을除外하고는豫置外換의處分은韓國銀行의規定에依하게된것이다.

그러나곧이어6.25戰爭이勃發하게되자當時의政治的,經濟的諸餘件에依하여外換management政策은韓·美兩國政府의合意에依하여決定하게끔되었던것이다.即1950年7月韓國政府와美國政府間에「UN軍司令官麾下部隊에依한經費支出에關한協定」이締結되어,國聯軍當局이軍事費支出을爲하여使用한圓貨에對한償還은實勢換率을適用하되韓·美間兩國政府의合意를보아야하며또同換率을변경할때에는조속한時日內에協議를거쳐公告하도록하였다.이리하여公告된換率이當時의公定換率이었던것이다.

그리하여公定換率은1950年11月에1美弗當2.5원으로引上되고1951年11月中에는當時對充資金換率에適用된바있는1美弗當6원을適用하기로하였으며1953年2月에通貨措置로서1美弗當6원(當時60圜)으로定하였다.

그後正式으로우리나라의公定換率을設定한것은1953年12月「經濟再建 및財政安定計劃에關한韓·美合同經濟委員會協約」의締結로부터이다.同協約에依하여公定換率은1美弗當18원으로引上되었다.

2) 單一公定換率制度

1955年8月워싱턴에서開催된韓·美兩國間의經濟및軍事會議에서「1954年11月7日字로署名된大韓民國과美國間에合意된議事錄附錄第一의改正의件」을締結하여,모든外換去來에1美弗當50원(當時500圜)의公定換率을適用하도록하였다.이로써公定換率對充資金換率및駐韓美軍의圜貨調達換率等에새로운單一公定換率을適用하게되었다.

이러한公定換率變更에關한協議에서1955年9月의서울都實物價指數를基準으로해서1956年中의同都實物價指數가125를超過하면同公定換率을再策定하기로되어있었다.그리하여1956年에同都實物價騰貴率이21%였으므로同公定換率1美弗當50원의換率을延長할수있게되었으며워싱턴과合議하여1美弗當50원의公定換率延長協定을締結하였다.

이리하여休戰後外換management政策은外換의豫置集中制를中心으로하여外換率의安定및

外換資金의 最大活用等을 圖謀하여 戰後 物資不足狀況에 대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심각한 物資不足에 처한 當時의 狀況에 依해서 1955年 9月에는 緊急物資輸入을 為한 外換賣却規定이 制定되었는데 政府保有外換의 賣却에 있어서는 物資의 早期導入을 為하여 同外換의 使用期限이 設定되었던 것이다.

3) 複數換率과 外換稅

1950年代 後半에 들어와서는 弗當 50원의 公定換率은 品目에 따라 實勢보다 過大評價되고 있어서 援助資金配定에 있어서 一部 實需要者가 莫大한 致富를 하게 되고 相對的으로 財政收入이 減少하게 되었다. 예컨데 當時 國內紡織業者들은 生產에 依한 利潤稼得에서 富의 蕪積을 이룬 것이라기 보다 이러한 援助物資의 配定自體가 莫大한 超過利潤을 이미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57年에는 1弗當 50원의 積立金에 依한 援助資金配定申請總額이 配定豫定額을 超過하는 경우에는 從前의 抽籤制를 廢止하고 高額의 國債買入을 申請한 者로부터 順次로 配定하는 國債添加制를 實施하여 이로써 事實上의 換率構造는 複數換率制의 性格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國債添加制에 依한 外換公賣方式은 1958年 8月 臨時外換特別法이 制定公布됨으로써 廢止되었다. 同臨時外換特別法의 主要內容은 當時 外換率의 複數換率의 性格에 依한 非現實性을 是正하기 為하여 外換稅를 新設한 것이다. 同臨時外換特別法에 依하면 輸出弗 및 軍納弗以外의 輸入外換을 取得한 者와 ICA 民需用物資購買를 為한 外換의 取得者 그리고 外資購買를 為한 政府 및 韓銀保有外換의 取得者를 外換稅의 納稅義務者로 規定하였다.

課稅對象外換에는 公賣外換이나 實需要者 購買外換을 不問하고 모든 取得外換의 美弗表示價格 1弗에 대하여 15원의 定額稅를 賦課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公賣外換에 對해서는 定額稅外에 別途로 競爭落札價格에서 公定換率로 計上된 價格을 控除한 殘額에 對하여 100% 外換稅를 賦課하였다.

이와 같이 1950年代末에는 換率의 非現實性問題가 國內의 經濟秩序確立에 莫大한 支障을 超來하였던 것이며 主體的一貫性 敘는 外換政策도 繼續 論難의 對象이 되었던 것이다.

VII. 國際收支

1. 日帝下의 國際收支

日帝下에 있어서 朝鮮의 國際收支는 前述한 바의 모든 經濟的 側面이 그려하듯이 獨立의 두 國家間의 產物로 把握될 수 없었다. 植民地 朝鮮의 經濟는 어디까지나 日本帝國主義經濟의 進行에 遂行되는 侍女에 不過하였으므로 朝鮮의 國際收支 역시 日帝의 經濟的

進行에 隨伴된 侍女의 役割을 할수 밖에 없었다는 것은 自明의 事實이다.

대체로 國際收支의 構成은 經常收支와 資本收支 및 貨幣用 金의 移動으로 分類될 것이다. 여기에서도 이러한 分析分野를 따른 것이지만 上述한 바와 같이 當時 朝鮮의 國際收支가 獨立的 國家間의 產物이 되지 못함을 勘案할때 統計收支로만 이들의 貸借關係를 다루어 보았자 主要한 意味는 되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朝鮮의 國際收支의 數值가 朝鮮經濟의 內的 requirement에 따라 對外間에 形成된 產物이 되지 못하고 오로지 日帝의 requirement에 相應된 決算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植民地와 植民母國間의 資本計定의 意味는 그 本來의 意義가 壓失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뿐만아니라 당시의 統計의 신빙성과 그 作成의 根據가 一貫性 있는 基礎를 갖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貿易外收支는 그 資料의 統計數值가 貿易收支와 그 內容의 基礎를 달리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統計가一切의 數量狀況을 보여주는 개략的인 指標는 될 수 있겠지만 朝鮮經濟의 質的, 構造的인 具體的 遺產을 握하는 데는 그 限界가 뚜렷하게 된다고 보겠다. 따라서 本項에서는 大體的인 윤곽을 經常收支中에서 貿易收支를 中心으로 하여 握하고 나아가서 國際收支의 其他 重要部分의 意義를 論하는 것이 妥當할것으로 思慮된다.

1) 貿易收支

合併以來 日帝末期에 이르기까지 朝鮮의 貿易收支를 總括해 보면 〈表 74〉와 같이 나타난다.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24年 및 1925年的 경우를 除外하면 每年 巨額의 入超現狀을 示顯하고 있으며 段階별로 볼 때 갈수록 累積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即 이것은 日

〈表 74〉 朝鮮輸出入超의 推移 (單位 1,000圓)

年 度	日本外地域	日 本	合 計
1910	— 9,899	— 9,969	— 19,869
1911	— 14,513	— 20,718	— 35,231
1912	— 20,743	— 25,387	— 46,130
1913	— 25,697	— 15,115	— 40,812
1914	— 18,199	— 10,460	— 28,659
1915	— 8,840	— 634	— 9,474
1916	— 7,820	— 9,495	— 17,316
1917	— 11,163	— 7,970	— 19,133
1918	— 24,433	+ 19,931	— 4,522
小 計	— 141,327	— 79,817	— 221,146
1919	— 76,060	+ 14,931	— 61,129
1920	— 78,536	+ 26,269	— 52,266

1 9 2 1	-	55,041	+	40,910	-	14,131
1 9 2 2	-	78,308	+	37,688	-	40,640
1 9 2 3	-	77,935	+	73,810	-	4,125
1 9 2 4	-	75,397	+	94,843	+	19,446
1 9 2 5	-	81,046	+	82,665	+	1,619
1 9 2 6	-	99,155	+	89,940	-	9,215
1 9 2 7	-	85,810	+	61,317	-	24,492
1 9 2 8	-	86,002	+	37,989	-	48,012
1 9 2 9	-	71,995	-	5,435	-	77,429
1 9 3 0	-	63,002	-	37,499	-	100,502
小計	-	928,287	+	517,408	-	410,879
1 9 3 1	-	39,924	+	31,257	-	8,668
1 9 3 2	-	32,476	+	23,474	-	9,002
1 9 3 3	-	11,595	-	23,963	-	35,558
1 9 3 4	-	21,853	-	31,929	-	53,782
1 9 3 5	-	35,687	-	72,920	-	108,607
1 9 3 6	-	39,233	-	129,871	-	169,104
1 9 3 7	-	15,041	-	162,969	-	178,010
1 9 3 8	+	34,484	-	210,806	-	176,322
1 9 3 9	+	110,880	-	492,534	-	381,654
小計	-	50,445	-	1,070,261	-	1,120,707
合計	-	1,120,059	-	632,670	-	1,752,732

資料：朝鮮總督府，「朝鮮貿易年表」。

本의 朝鮮殖民史의 大體의인 段階에 따라 別해 보면 1910 年에서 1918 年에 이르기 까지 221,146 千圓의 輸入超過現狀을 나타내고 있다. 1919 年에서 1930 年까지 則는 410,879 千圓의, 거의 倍增하는 入超現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를 다시 1931 年부터 1939 年까지 를 보면 1,120,707 千圓으로 濟增되어 1910~1918 年間에 比하여 約 5.1 倍 增加하였으며 다시 1919~1930 年間에 比하여서는 約 2.7 倍 入超現狀이 增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첫 年度인 1910 年과 제일 늦은 年度인 1939 年을 比較하면 각각 19,869 千圓과 381,654 千圓으로서 約 19.2 倍에 達하는 것이다.

이를 다시 表에 依據하여 日本과 日本外地域으로 나누어 보면 日本에 對해서는 第 1 段階와 第 3 段階에서 각각 79,817 千圓 및 1,070,261 千圓의 輸入超過現狀을 나타내고 있으며 第 2 段階에서는 517,408 千圓의 輸出超過現狀을 示顯하고 있다. 그리고 日本外地域에 對해서는 第 1 段階, 第 2 段階 및 第 3 段階 全般에 걸쳐 각각 141,327 千圓, 928,287 千圓 및 50,445 千圓의 輸入超過現狀을 나타내었다.

全體的으로 보아 朝鮮의 貿易은 1910 年에서 1939 年까지 日本에 對해서는 632,670 千圓,

그리고 日本外地域에 對해서는 1,120,059 千圓의 輸入超過現狀을 示顯하여 合計 1,752,732 千圓의 輸入超過를 記錄한 것이다.

20 世界 前半期 植民地 朝鮮의 貿易構造가 大部分이 對日關係로 形成되어 있었음은 이미 輸出入商品構造의 分析과 市場構造의 分析 및 其他의 分析에서 具體的으로 밝혀온 바와 같다. 그러므로 먼저 對日貿易關係의 貿易收支의 推移를 考察해 보면 特徵的인 現狀等이 나타나고 있다.

即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10 年에서 1917 年에 이르기 까지 繼續的인 輸入超過現狀을 나타낸은 바로 그들의 植民地 經營의 初期가 商品市場化를企圖한 것이었음을反映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即 當時의 日本資本主義는 그 初期的性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原始的 收奪의 形態를 取하면서 주로 商品市場化에 注力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1918 年에서 1928 年에 이르는 期間에는 對日本貿易關係에서 植民地 朝鮮은 輸出超過現狀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도 表에서 나타나는 바에 따르면 莫大한 額數에 達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現狀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혼히들 植民地 美化論者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當時 朝鮮이近代化되어 日本에 商品을 輸出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 바로 國際收支分析에서 그 統計資料만으로 간단히 結論을 내리는데 대한 誤謬가 나타나는 것이다. 獨立的 國家間에 貿易關係라면 어느 程度 그 誤謬는 적을 것이지만, 後進國과 先進國과의 關係 특히 植民地와 그 植民母國과의 關係에 있어서는 엇청난 잘못이犯해지는 것이다. 그러면 植民地朝鮮이 日本帝國主義에 對해 이러한 輸出超過現狀을 示顯하는 現狀은 그 事實에 있어서 어떠한 內容을 갖고 있는가를 보자. 이미 商品分析에서 밝혀진 바이지만 이는 朝鮮에 對한 日帝植民地 支配의 第2段階의 性格으로서 朝鮮을 單純히 商品市場화한 第1段階와는 달리 더 나아가서 모노칼츄어型 植民地化로 固着시켜 朝鮮을 그들의 食糧供給基地와 原料供給基地로 만들었던 事實에 基因하는 것이다. 이 段階에 와서는 日本資本主義는 產業資本의 土臺를 確立하여 龍大한 原料資源을 朝鮮에서 收奪하여 急速한 發展을 이루하였음은 歷史的 事實이다. 當時 朝鮮에서 土地事業의 完了, 產米增產計劃, 綿花增產計劃, 產繭增產計劃, 南綿北羊政策, 全國的인 鎮山開發等은 이러한 歷史的 事實은 뒷받침해주는 代表的인 表現일 것이다. 實際의 原料資源의 收奪과 食糧收奪은 商品analysis에서 이미 說明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그 重復을 피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1929 年頃부터 始作하여 1931 年과 1932 年을 除外하면 1939 年에 이르기까지 貿易收支는 다시 逆轉하여 輸入超過現狀으로 復歸되어 1936 年 以後에 와서는 輸入超過現

狀이 激增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1920 年代末의 世界的인 大不況期를 맞아 日本도 그들의 不況의 모순을 植民地 朝鮮에서 해소시키며 나아가서 1931 年에는 滿洲事變을 도발하게 하는 經濟的 與件을 說明해 준다. 即 日本資本主義는 이 時期에 들어와 自國內에서 價值法則은 더 한층 貫徹되어 金融獨占資本主義화하였고 이로써도 解決하지 못하였던 不況의 돌파구는 朝鮮과 大陸進出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日本資本의 朝鮮進出의 本格화와 함께 朝鮮의 貿易收支는 다시 輸入超過現狀으로 뒤바뀌었고 나아가서 大陸進出을企圖하여 1931 年에 滿洲事變을 도발하고는 大陸前進基地로 변모됨으로써 더욱 日本資本의 進出이 顯著해진데 基因하는것이었다. 그리고 1936 年부터 輸入超過가 激增하는 現狀은 바로 1937 年의 中·日戰爭으로 說明이 될 것이다. 이때에는 完全히 大陸前進兵站基地化의 性格을 갖추어 비단 朝鮮에서의 利潤獲得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中國大陸을 侵略하기 為한 前進基地를 建設하기 為한 資本進出도 顯著해진데 依한다.

日本外 地域의 貿易收支를 檢討해 보면 繼續의 輸入超過現狀을 말해 주는데 이는 主된 內容이 滿洲를 비롯한 關東州와 中國一部에 依해서 이루어 지고 있음은 이미 言及한 바와 같다.

1919 年以來 輸入超過가 激增하는 現狀은 이 段階에 있어서 이미 滿中產 粟을 비롯한 輸入이 激增해진 것으로부터 비롯하여 日本資本이 國內에 建設한 工業을 為해 豆類, 石炭等의 長大한 原材料資源이 滿洲地域으로 부터 輸入되었기 때문이었다.

다음으로 1931年부터 1937 年까지 이 期間에 如前히 輸入超過의 現狀을 나타내고 있으나 다소 減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역시 日帝의 大陸前進基地로서 建設된 朝鮮內의 工業製品을 滿洲와 中國으로 輸出하였기 때문에 그 輸入을 相殺하였음에 基因하며, 滿洲地域이 完全히 日帝의 植民地圈으로 形成되었기 때문에 日本帝國主義經濟를 為한 分業的編成을 企圖한데 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1937 年에 中日戰爭을 도발하고 부터는 1938 年과 1939 年에는 다시 輸出超過現狀을 示顯하게 되는데 이는 當時의 日本과 朝鮮에서 滿洲地域으로 資本流出이 激甚하였던 狀況을 反映해 주고 있으며 한편으로 關稅政策 및 朝鮮統制에서 對滿洲地域 輸出統制를 斷行한 事情과도 相應한다고 보겠다. 即 新植民地에로의 超過利潤을 達成하려는 日本金融獨占資本의 광분하는 現狀을 反映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이와 같이 植民地 朝鮮의 貿易收支는 어디까지나 日本帝國主義經濟의 基本法則에 依해 서 支配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統計의 그 分析 역시 그와 같은 角度에서 分析되어야 할

것이다. 이 貿易收支의 統計를 마치 當時 朝鮮의 經濟가 가진 內的 發展의 一面貌로서 把 握할려고 한다면 植民地 美化論者들의 結論에 到達하고 마는 것은 자명의 事實이다.

2) 金・銀의 移動

〈表 75〉 朝鮮金銀輸出入의 推移 (單位 : 1,000圓)

年 度	輸 出	輸 入	輸出超過
1 9 1 0	9,200	1,876	7,324
1 9 1 1	12,857	4,739	8,118
1 9 1 2	10,124	1,473	8,652
1 9 1 3	10,944	202	10,742
1 9 1 4	10,825	312	10,512
1 9 1 5	11,764	833	10,931
1 9 1 6	16,121	1,671	14,450
1 9 1 7	9,669	467	9,202
1 9 1 8	6,024	371	5,653
小 計	97,528	11,944	85,584
1 9 1 9	4,419	1,639	2,780
1 9 2 0	23,843	16,289	4,554
1 9 2 1	7,307	2,540	4,830
1 9 2 2	4,189	1,150	3,039
1 9 2 3	6,593	1,058	5,535
1 9 2 4	5,737	1,571	4,145
1 9 2 5	4,358	810	3,548
1 9 2 6	7,452	469	6,982
1 9 2 7	5,263	521	4,742
1 9 2 8	3,670	538	3,132
1 9 2 9	6,097	886	5,211
1 9 3 0	26,804	11,731	15,072
小 計	105,732	38,222	67,510
1 9 3 1	39,548	21,957	17,591
1 9 3 2	28,315	10,604	17,711
1 9 3 3	24,395	3,848	20,547
1 9 3 4	36,350	402	35,948
1 9 3 5	210,593	73,218	137,375
1 9 3 6	65,574	8,044	57,530
1 9 3 7	65,574	8,044	57,530
1 9 3 8	65,574	8,044	57,530
1 9 3 9	65,574	8,044	57,530
小 計	601,497	142,205	459,292
合 計	804,677	192,371	612,386

資料：朝鮮總督府，「朝鮮貿易年表」及「朝鮮總督府統計年報」

日帝植民地 時代에 있어서 朝鮮의 金銀移動을 보면 〈表 75〉에서 보는 바와 같다. 表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輸出 804,677千圓, 輸入 192,371千圓으로서 그 輸出超過는 612,386千圓이었다.

이를 그들의 植民地 經營段階에 따라 区分해 보면 1910年에서 1918年까지는 輸出이 97,528千圓이며, 輸入이 11,944千圓으로서 輸出超過는 85,584千圓이었다. 다음으로 1919년에서 1930년까지를 보면 輸出이 105,732千圓이며 輸入은 38,222千圓으로서 輸出超過는 67,510千圓이었다. 그리고 1931年과 1939年内에는 輸出이 601,497千圓, 輸入이 142,205千圓으로서 그 輸出超過는 459,292千圓에 達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植民地 朝鮮의 國際收支에서 金·銀의 移動은 심한 金流出現狀을 示顯하고 있는데 日帝가 朝鮮으로 부터 그만큼 莫大한 量의 金·銀을 收奪해 간 것이다. 日帝가 이러한 莫大한 量의 金·銀을 要求하게 된 理由는 1897年에樹立된 自國의 金本位制度의 充實을 基하기 爲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對한 日本內의 金生產이 不足하였을 뿐아니라 日本도 當時 對先進國貿易에서 莫大한 輸入超過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의 決濟를 爲한 金이 必要하였던 것이다. 환연하면 相對的으로 뒤늦게 發展한 日本의 資本主義는 龙大 한 量의 原資財를 先進國에 依存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資本主義化를 促進하고 植民地經營을 遂行해 나가는데 必要로 된 이러한 資本財의 輸入代金은 朝鮮으로 부터의 金·銀流出에 依해서 決濟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解放後의 國際收支

1) 國際收支의 概況

解放後 美軍政期에 있어서 우리나라 國際收支의 根據는前述한 여러 分野의 分析에서 이미 그 內容이 言及되었으며 그 經濟的 內容도 貧弱하여 別項으로 取扱할 意義가 微微하다. 뿐만아니라 資料도 不充實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政府樹立後 特히 1950年代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國際收支의 概況을 檢討하고자 한다.

1950年에서 1960年에 이르기 까지 우리나라 國際收支의 總括表를 보면 〈表 76〉과 같은데 이에 依據하여 國際收支를 概觀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50年代初 우리나라 對外去來를 보면 保有外換에 依한 去來는 極히微微하였고 大部分의 輸入需要가 援助物資導入으로 充當되었기 때문에 外換保有額은 1950年度의 25百萬弗에서 1953年에는 107百萬弗로 增加하였다.

商品輸出은 一定한 趨勢가 없었으며 1950年度에 비로서 解放後 最初로 政府米穀輸出이 있어 25百萬弗의 輸出實績을 記錄하였다. 商品輸入은 繼續 增加하여 우리나라의 慢性的

〈表 76〉 圖 繫 收 支 表 (1950~1960 年)

(單位：百萬弗)

註：負符號는 借邊，符號에는 貸邊을 表示함。

資料：서울大學 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國際收支의 長期展望對策」，1964。

인 入超現象이 나타났는데 이는 解放以後 日本經濟로부터의 離脫 및 產業構造의 南北分割에 따른 國內生產秩序의 混亂 및 動亂以後 緊急食糧導入과 戰時生產維持에 所要되는 原資材導入增加에 基因한 不可避한 現象이었다.

貿易外去來에 있어서는 韓國銀行에서 外換受拂統計를 作成하기 始作한 1952年 以後 貿易外收入이 增加하였으며 이것으로 貿易赤字를 補填하여 왔다. 即 1952年 9月부터 償還되기 始作한 UN 軍貸與金의 償還弗은 特別外換貸付形式을 通하여 輸入擴大가 可能하였으며 動亂期中의 UN 軍債還弗이 貿易收支赤字의 補填源泉이 되었다.

1952年 以來 貿易外收入의 約 90%를 占하여온 UN 軍貸與金債還弗을 除外한 貿易外收入의 內譯을 보면 市中弗貨의 韓銀集中額이 가장 많았고 韓銀保有外貨의 對外投資收益이 다음이고, 運輸 및 保險關係도 政府의 嘉獎策을 反映하여 少額이나마 着實한 增加傾向을 보였는데 運輸 및 保險의 支拂과 比較하면 그 隔差가 커다. 貿易外支拂은 對外送金(贈與)이 首位를 차지하였으며 運輸 및 保險이 다음이었다.

1953年 7月에 休戰이 成立되고 F.O.A를 通한 2億弗의 對韓經濟援助가 公表됨을 契機로 우리나라의 모든 經濟政策의 主要目標는 戰災復舊와 「인플레」의 收拾에 있었다.

이러한 與件下에서 1954~56年間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國際收支推移를 보면 1956年度를 除外한 1954年과 1955年 兩年中 經濟去來의 收支差는 約 30百萬弗의 赤字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外換保有額도 減少傾向에 있었다. 이와같이 保有外換이 減少한 것은 休戰 以後 繁張된 世界情勢가 漸次 緩和됨에 따라 重石需要가 減少하여 輸出이 1953年の 40百萬弗에서 繼續減少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1954年부터 實施된 國聯軍費競賣와 1955年 8月 公定換率이 1美弗當 50 원으로 引上策定된 後의 政府保有弗公賣로 輸入이 크게 增加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56年度의 國際收支는 經常去來上 25百萬弗의 黑字를 보였으며 保有外換도 다시 增加하였다. 1956年度 經常去來의 이와같은 好轉은 商品輸出이 多少減少하였기 때문이다. 當時의 貿易去來를 보면 對國聯軍去來를 除外하고는 極히 微微하였다. 即 輸入은 政府去來中 對國聯軍受入을 大宗으로 하여 1955年까지 增加하였다. 對國聯軍受入은 駐韓UN軍이 貸付받은 團貨로 所要經費에 充當하였었는데 1955年 8月 公定換率이 變更實施된 以後는 國聯軍에 대한 團貨貸與와 國聯軍의 弗貨競賣買制는 一切 廢止되어 國聯軍이 所要되는 團貨는 心要時 韓國銀行에서 公定換率로 直接 買入하도록 하였다.

한편 送金受入은 1954年 및 1955年에는 8百萬弗台에 머물었으나 1956年度에는 主로 宗教團體에 對한 送金이 增加하여 13百萬弗에 達하였다. 送金支弗도 역시 1954年度에 4

百萬弗이었던 것이 1956 年度에는 8 百萬弗로 增加하였다.

한편 資本去來를 보면 國聯軍의 公益物使用料가 對國聯軍債權增加로 民間短期資本去來에 記錄되었을 뿐이었다.

政府 및 金融機關의 資本去來를 보면 우리나라가 1955 年 8 月 26 日字로 IMF 와 IBRD에 加入하게 되자 이 兩國際機構에 대한 出資金의 拂入이 長期資本去來로 記錄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短期資本去來는 韓·日 清算計定上의 負債增減, 國際機關 및 其他 外國機關의 對韓銀 원貨預金增減等이 있었다.

商品輸入은 美國의 對外援助政策의 轉換을 反映하여 1957 年의 374 百萬弗을 「파이크」로 減滅되기 시작하였는데 援助弗의 減縮을 補填하기 爲한 政府保有外換에 依한 自力輸入은 急增하였다. 그러나 總輸入規模는 오히려 減減함으로써 1959 年 2·4 分期부터는 輸入商品價格의 昂騰이 物價의 先導的 役割을 하였다.

保有外換의 增加는 對國聯軍外貨受入의 增加에 힘 입었다. 即 對國聯軍外貨受入은 1956 年의 24 百萬弗에서 1960 年에는 63 百萬弗로 크게 增加되었다. 한편 資本去來를 보면 1959 年에 처음으로 D.L.F. 借款導入 및 「쿠우리」基金借入等 長期資本의 움직임이 있었다. 外換保有額은 1956 年度末에 97 百萬弗이었던 것이 繼續增加하여 1960 年度末에는 155 百萬弗에 達하였다.

2) 貿易收支

解放後 우리나라의 貿易收支의 推移를 보면 〈表 77〉과 같은데 이에 依하면 1946 年 以後부터 1959 年까지 貿易收支의 輸入超過는 3,177 百萬弗에 達하고 있다.

그런데 그中 2,676 百萬弗이 援助에 依한 輸入이었으므로 貿易收支上 實質的 赤字는 500 百萬弗이다. 解放直後 美軍政初期였던 1946 年을 除外하고 1947 年을 基準으로 하여 볼때 輸入超過額은 每年增加하고 있으며 貿易收支上의 實質的 赤字도 繼續 增加하고 있는 것이 特徵의in 現象이다.

〈表 77〉 貿易收支의 推移 (單位 : 1,000 弗)

年 度	輸入超過總額 (=總輸入 - 輸出)	指 (1947=100)	實質的赤字 (=輸入超過總額 - 援助輸入)	指 (1947=100)
1946	57,180	27.8	7,684	130.0
1947	205,811	100.0	5,912	100.0
1948	195,743	90.2	10,151	171.7
1949	118,971	57.8	2,572	43.5
1950	18,297	8.7	(+) 26,548	—
1951	139,768	67.9	10,547	178.4

1952	187,220	91.0	25,897	438.0
1953	305,851	148.6	114,045	1,929.0
1954	219,081	106.4	69,680	1,178.0
1955	323,450	157.2	80,663	1,364.4
1956	361,468	175.6	41,571	703.2
1957	419,972	204.1	45,946	777.2
1958	361,714	175.8	50,738	858.2
1959	272,547	132.4	61,805	1,045.4
總 計	3,177,073		500,668	
年 平 均	226,934		35,762	

資料：1946~1951年은 韓國產業銀行, 「產業經濟10年史」, 1955. 그以後는 韓國銀行, 「經濟年鑑」, 1957 및 「經濟統計年報」各年號。

每年 輸入超過總額은 變動은 끊시 심하지만 1947年の 206百萬弗에서 1959年の 273百萬弗로 約 32.4%가 增加하였으며 貿易收支上 實質的인 赤字는 1947年の 6百萬弗에서 1959年の 62百萬弗로 約 10倍以上 增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現象은 結局 援助輸入을 通하여 차극되고 開發된 輸入需要가 援助輸入의 增加趨勢을 능가하는 事實을 意味하며 또한 輸入需要는 繼續 構造的으로 增加하고 있으나 援助는 減少하는 趨勢였기 때문이다.

3) 貿易外收支

大部分의 後進諸國은 基礎的 生產設備가 不足하여 商品輸出은 微微한데다가 商品輸入은 先進諸國과의 關係에서 老大한 額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實情이다. 때문에 經常收支의 貿易收支에서 輸入超過現象이 累增되어 가고 있음은 後進國의 전형적인 特徵으로 지어있다. 이러한 輸入超過에 依한 貿易收支의 赤字는 對先進國關係의 外債 및 資本計定의 受入超過로써 補充하고 部分的으로 貿易外收支에 依해서 補填되고 있다.

〈表 78〉 貿 易 外 收 支 (單位: 千弗)

年 度	收 入	그 중 對 UN 軍 關 係 受 入 比 重 (%)	支 給	그 중 運 輸 의 重 (%)	收 支 差
1952	72,108	86.0	5,847	21.4	66,261
1953	133,713	83.8	13,998	14.3	119,715
1954	52,595	77.0	7,374	7.2	45,221
1955	66,420	82.5	10,091	0.1	56,329
1956	37,027	54.5	14,734	2.7	22,293
1957	55,319	74.5	11,836	9.8	43,483
1958	80,695	81.2	13,468	15.7	67,272
1959	78,254	82.0	18,041	20.7	60,213

資料：韓國銀行, 「經濟年鑑」 및 「經濟統計年報」

解放以後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一般的類型의 後進國에 전형적으로 屬해 있다. 即 貿易收支에서 본 바와 같이 龐大하게 累積되어 온 貿易赤字를 大部分 援助에 依해서 充當하고 남은 부분은 貿易外收支의 黑字로서 補填해 왔다.

그러나 다른 大部分의 後進國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이 貿易外收支의 主宗을 이루는 것 이 <表 78>에서 보는 바와 같이 對國聯軍關係受入이라는 것이 特徵的이다. 即 戰爭을 契機로 하여 美軍을 위주로 한 UN軍이 駐屯함으로써 UN軍의 直接買上弗, 用役을 包含한 軍納, 公益物使用料 및 對充資金關係 等에서 貿易外受入의 約 80%内外를 占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支拂面에 있어서는 다른 大部分의 後進國과 같이 輸送, 保險等의 支拂이 큰 項目을 占하고 있다.

貿易外收支를 總括하여 1952年에서 1959年間을 보면 合計 480百萬弗의 黑字를 示顯하고 있다.

結　　言

20世紀 韓國貿易史를 諸側面에서 可能한 資料를 동원하여 多角的으로 考察해 보고 同時에 그 經濟史的 背景을 檢討해 보았다. 筆者が 貿易史의 基本性格을 經濟史의 外延으로 把握하고 政治經濟學의 方法論을 擇하였던 것은 本論文에서 그 正當性이 認定되었다고 보겠다. 20世紀 韓國貿易史의 경우 政治經濟學의 本質을 捨棄해 버리고 貿易을 政治經濟와 分離하여 과학하고자 하는 方法論은 헛된 노력임이 本論文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立證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輸出入商品構造, 輸出入市場構造 및 諸般 貿易政策 等의 分析에서 貿易理論에 대한 筆者の 方法論이 更우 具體的으로 관찰되고 있음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貿易理論을 實踐과 유리된 理論의 造作으로 發展시키려는 近來의 傾向性은 歷史的 實踐과 具體的 現實 속에서 否定되고 있다고 보겠다.

20世紀 韓國貿易史의 商品構造 및 市場構造는 日帝의 植民史의 外形으로 밖에 간주할 수 없으며 諸般 貿易政策等도 植民政策의 一環以外에는 어떠한 法則性도 發見하기 어려운 사실이 諸資料에서 밝혀지고 있다.

解放後 10여년간에 있어서는 日帝植民地 遺產을 청산하면서 새로운 方向의 再編成過程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20世紀 韓國貿易史는 國民經濟의 貿易依存度의 漸高 및 對外依存性의 增大方向을 계속하고 있음이 資料에서 밝혀지고 있다.

國民經濟의 內在的 發展法則이 관철되고 있는 貿易史의 面貌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實情이며 外勢侵略史의 法則性이 貿易史를 관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서는 國民經濟의 發展過程도 內在的 法則性이 發見되기 보다는 貿易史에 관철되고 있는 法則에 의해 國民經濟가 支配되고 있음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世紀韓國貿易史는 民族經濟의 成長과 發展의 外延이 되지 못하고 民族受難史의 外延에 不過하였다는 點을 우리는 똑바로 直視하고 앞으로 이 나라의 貿易發展의 方向을 摸索하여야 할 것이다.